

에코델타시티 아테라(24BL) 공공분양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코델타시티 24BL)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1,02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전용면적 59㎡A 429세대, 59㎡B 86세대, 59㎡C 113세대, 59㎡D 17세대 84㎡A 322세대, 84㎡B 15세대, 84㎡C 15세대, 84㎡D 27세대, 84㎡E 1세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중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대표번호 : 051-202-1025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공공분양주택	부산광역시 거주자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택지유형	분양가상한제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공공택지	적용	10년	1년	없음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3.21.(금)	2025.03.31.(월)	2025.04.01.(화)	2025.04.02.(수)	2025.04.08.(화)	2025.04.10.(목) ~ 2025.04.27.(일)	2025.05.20.(화) ~ 2025.05.23.(금)

■ 부산 에코델타시티 24블록 '에코델타시티 아테라' 민간참여 공공분양주택 건설사업 주관 업체 안내

- 사업주체 : 부산도시공사[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금호건설(주) / ㈜대성문 / 수근종합건설(주) / ㈜가화건설 / ㈜다원엔컴퍼니]
- 시공업체 : 금호건설(주) / ㈜대성문 / 수근종합건설(주) / ㈜가화건설 / ㈜다원엔컴퍼니
- 분양주체 : 금호건설(주)

■ 공통 유의사항

2024.03.25. / 24.12.18. 개정 된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관련 에코델타시티 아테라(공공분양주택) 적용 사항			
구분	구분	종전	개정
24.03.25. 개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자녀 수 기본 요건 완화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 3명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 자녀 2명
	배우자 혼인 전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 여부 이력 미적용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로 특공 신청 제한	배우자가 혼인 전 아래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특별공급 신청 가능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 신생아,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가능(단, 혼인 전 처분 시에 한함)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	건설량의 20% 신설
	일반공급 무주택세대구성원 유지 시점 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 ~ 입주 시 까지	입주자모집공고일
	부부 중복청약 관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원칙으로 세대원 내 중복청약시 모두 부적격	부부에 한해 중복청약 가능(선신청 인정, 후신청 무효)
	특별공급 맞벌이 부부 소득요건 완화	-	각 유형별 소득 기준 완화(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표4 참조>
	출산가구 소득·자산 요건 완화	-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10~20%p 추가 가산 <표35 참조>
24.12.18. 개정	특별공급 추첨제 10% 신설	-	각 유형별 추첨제 구간 10% 신설(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 완화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태아 불인정)	혼인 중이거나 미혼자녀(태아 인정)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	①아파트 : 60㎡ 이하 비수도권 1억 이하(수도권 1.6억 이하) ②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85㎡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수도권 5억 이하)

에코델타시티 아테라 주요사항

1순위 요건	자산 및 소득요건	재당첨제한	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내 거주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입주자저축 납입 횟수 6회 이상 	<p>[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용 59㎡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 자동차 38,030천원 이하 - 소득 <표4 참조> *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제외 <p>[일반공급 전용 84㎡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미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재당첨제한 적용주택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내 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 예외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03.25. 신설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이력은 배제(예비신혼부부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의무기간 無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전매제한 1년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재당첨제한 10년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의거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등 중복신청 가능하며, 부부 모두 당첨될 경우 신청 접수일이 앞선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으로 인정)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합니다.
- ※ 단, 본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으로 1세대 1주택 기준이며, 부부를 제외한 세대원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등에 청약을 신청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 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당첨자(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84㎡형 제외)의 경우 소득 및 자산요건이 적용되며, 2024.03.25.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자산요건을 자녀수에 따라 10~20%p 완화하여 적용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는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051-202-1025)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 청약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격으로 중도금(총 분양대금의60%)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약 및 공급계약 등 주요 분양일정에 일반 고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경우 대출이자 이자후불제 사업이며, 중도금 대출은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중도금 대출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사사항이 아니고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하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해당지역은 비행안전구역에 해당하며, 항공기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12.1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신청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무주택 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제한 등의 신청자격 검증 대상 및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1순위(우선공급)	2순위(잔여공급)	
무주택, 중복청약, 재당첨 제한 등 판단범위	본인 및 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 이상) ※ 국가유공자 장애인 불필요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신청자 본인 1순위(6개월, 6회이상)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신청자 본인 1순위(6개월, 6회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신청자 본인 (6개월, 6회이상)	신청자본인 (가입자)	
세대주 여부	-	-	-	-	신청자 본인	-	-	-	
과거 주택소유 이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신혼부부 (혼인신고일~공고일)	세대구성원**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소득	해당 없음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3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 200%)	(세대) 월평균소득 140% 이하 (맞벌이*** 200%)	• 59㎡형 (세대) 월평균소득 100% 이하 • 84㎡형 : 미적용		
자산(부동산, 자동차)	해당 없음	(세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38,030천원 이하					• 59㎡형 (세대) 부동산 215,500천원 이하 자동차 38,030천원 이하 • 84㎡형 : 미적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검증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맞벌이'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2024.03.25.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비신혼부부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신청이 가능(전환 해지를 이미 신청한 중전 저축으로는 청약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은 주택소유여부, 자산, 소득, 중복청약 및 재당첨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일(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함이다.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제53조 제6호의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선정 - 본 주택은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으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표7>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지역 내 경쟁 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외에 거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애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생활속박사실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 특별공급(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에코델타시티 아테라 청약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3.21.(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 구성원, 지역 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5-000084이며, 이 공고문은 「에코델타시티 아테라」 홈페이지(<https://arteraedc.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함)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	2025.03.31.(월)	2025.04.01.(화)	2025.04.02.(수)	2025.04.08.(화)	2025.04.10.(목) ~ 2025.04.27.(일)	2025.05.20.(화) ~ 2025.05.23.(금)
방법	인터넷 청약 (09:00~17:30)			개별조회 (청약 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코델타시티 아테라 건분주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회신이 늦어질 경우 상기 계약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접수 : 건분주택 (10:00~14:0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청약 Home)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PC :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앱 : 청약 Home)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코델타시티 아테라 건분주택 -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31 (래법동 532-7번지) ※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동가능하며 변동 시 별도 안내 혹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공급은 건보주택 방문접수(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31(래뎀동 532-7), 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 Home"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경우 서류접수 기간 내 미접수 시 계약 포기로 간주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반드시 서류접수 기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예비입주자의 경우 서류접수 및 추첨 계약 기간 등이 상이하며,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첨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당첨자 서류제출 방법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당첨자 계약체결 일정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신청자의 입주자자격 순위, 납입인정금액 및 당첨자 확정 후 무주택여부, 당첨 사실 등 조회 확인을 위해 가입은행 등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청약자는 청약 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과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해야 하며, 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시 소득 및 자산조회를 위해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가 필요함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 공고문의 신청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여부, 거주지역, 해당첨제한여부, 주택소유여부 및 소득·자산 등),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한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 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신청 제한 등)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타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및 (민간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주택은 국민주택(공공주택)으로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 또는 특별공급에 1세대 내 1인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의 경우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부부 모두 당첨될 경우 우선순위에만 유효하며 후순위는 무효 처리됩니다(예비신혼부부 제외). 또한 동일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유형에 따라 상이하오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청약 관련 유의사항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단지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중복청약한 경우			
청약 유형		본인 중복 청약(1인)	세대원 중복 청약(2인)
(특공) 공공분양주택 or 민영주택(비규제지역)	+	(특공) 공공분양주택 or 민영주택(비규제지역)	청약 불가
(특공) 공공분양주택	+	(일반)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무효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단지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중복청약한 경우			
청약 유형		본인 중복 청약(1인) (동일 청약통장 사용시)	세대원 중복 청약(2인)
선당첨	+	후당첨	
(특공 or 일반) 공공분양주택	+	(특공 or 일반) 공공분양주택	선당첨 인정(후당첨 무효)
(특공 or 일반) 공공분양주택	+	(일반) 민영주택(비규제지역)	선당첨 인정(후당첨 무효)
(특공 or 일반) 공공분양주택	+	(특공) 민영주택(비규제지역)	선당첨 인정(후당첨 무효)

※ 2024.0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특별공급·국민주택(공공분양주택)·재당첨제한 적용 주택에 대해 부부에 한해 중복청약 인정됩니다.
[중복당첨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후순위 무효(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제외)]

- 본인이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신청 가능하며, 이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자격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은 1회로 한하여 공급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12호 부터 제14호 까지 해당하는 경우와 제36조 제1호, 제8호의2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2024.03.25.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비신혼부부 제외)**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비조정대상지역인 부산광역시 강서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실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명'로서 과세대상으로 분양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체결 시점에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각각 50%)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수입인지 사이트 :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고 소인처리)
- 계약자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가산세 등)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하며,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적당첨정, 공급집서 교환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분양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더라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환불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등기와 무관하게 중간 분양권 전매(최초 분양계약자와 소유권이전등기 시 최종 매수자까지)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단, 사업주체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하여 인지세의 1/2을(연대 균등 각각 50% 납부) 부담하며, 최초 분양계약 후의 거래(분양권 전매 포함) 등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종합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벌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있습니다.
- 「주택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 전매된 경우 분양권 매수자는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4.12.18. 개정 및 「공공주택 특별법」 2025.01.31. 시행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I 공급 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1. 공급 규모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코델타시티 24BL)
- 공급규모 : 공공분양주택 지하2~지상16층, 16개동 총 1,025세대 (특별공급 714세대, 일반공급 31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2.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약식 표기 (타입)	세대당 주택면적(m ²)						세대별 대지비분 (m ²)	공급세대수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 주차장등)	계약 면적 (계)	특별공급										일반 공급	최하층 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공급 면적 (계)			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부양	신생아	계				
2025000084	01	59.9001A	59A	59.9001	21.8081	81.7082	43.7652	125.4734	47.8489	429	43	43	43	64	21	86	300	129	35		
	02	59.9161B	59B	59.9161	22.0564	81.9725	43.7769	125.7494	47.8617	86	9	9	9	13	4	17	61	25	7		
	03	59.9115C	59C	59.9115	21.9550	81.8665	43.7736	125.6401	47.8581	113	11	11	11	17	6	23	79	34	8		
	04	59.7756D	59D	59.7756	21.8702	81.6458	43.6742	125.3200	47.7495	17	2	2	2	3	1	3	13	4	2		
	05	84.9830A	84A	84.9830	29.4243	114.4073	62.0918	176.4991	67.8855	322	32	32	32	48	16	64	224	98	25		
	06	84.7363B	84B	84.7363	30.4413	115.1776	61.9115	177.0891	67.6884	15	1	1	1	2	1	3	9	6	1		
	07	84.8556C	84C	84.8556	30.3120	115.1676	61.9987	177.1663	67.7837	15	1	1	1	2	1	3	9	6	1		
	08	84.4453D	84D	84.4453	30.4127	114.8580	61.6989	176.5569	67.4560	27	3	3	3	4	1	5	19	8	2		
	09	84.9478E	84E	84.9478	32.1533	117.1011	62.0661	179.1672	67.8574	1	-	-	-	-	-	-	-	1	-		
합계										1,025	102	102	102	153	51	204	714	311	81		

- ※ 주택형별 특별공급 물량 중 신청접수 미달 물량에 대해서는 다른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단, 주택형별 특별공급 전체 신청물량이 공급량에 미달할 경우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주택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계량 단위인 제곱미터(m²)로 표기하였습니다.(m²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² × 0.3025 또는 m²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에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 현관, 세대 내부벽체 면적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기전실, 지하주차장, 지하코아),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의 공용면적입니다.
-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주거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해당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타입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상기 면적과 대지비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 세대별 대지비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비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등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지비분은 가감속차선 설치에 따른 기부채납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합니다.)
-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열원을 사용한 중앙 공급 방식이 적용됩니다.
- ※ 입주예정 시기는 2028년 03월로 예정되어 있으나,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 표시 안내

입주자 모집공고상 (청약시 주택형)	59.9001A	59.9161B	59.9115C	59.7756D	84.9830A	84.7363B	84.8556C	84.4453D	84.9478E
약식표기	59A	59B	59C	59D	84A	84B	84C	84D	84E

3. 공급금액 (분양대금)

[단위 : 원, 세대]

주택형	약식 표기	동(라인)	층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1차 중도금 (10%)	2차 중도금 (10%)	3차 중도금 (10%)	4차 중도금 (10%)	5차 중도금 (10%)	6차 중도금 (10%)	잔금 (30%)
						계약 시	2025.09.22.	2026.01.20	2026.06.22	2026.11.20	2027.04.20	2027.09.20	입주 시
59.9001A	59A	101동(2.4호) 102동(2.4호) 103동(2.4호) 105동(2.4호) 106동(2.45호) 109동(2호) 110동 112동(5.6호) 113동 114동(1.3.4호) 115동(1.3호) 116동	1	17	375,200,000	37,520,000	37,520,000	37,520,000	37,520,000	37,520,000	37,520,000	37,520,000	112,560,000
			2	35	383,500,000	38,350,000	38,350,000	38,350,000	38,350,000	38,350,000	38,350,000	38,350,000	115,050,000
			3	35	391,90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117,570,000
			4	35	400,200,000	40,020,000	40,020,000	40,020,000	40,020,000	40,020,000	40,020,000	40,020,000	120,060,000
			5~9	174	408,600,000	40,860,000	40,860,000	40,860,000	40,860,000	40,860,000	40,860,000	40,860,000	122,580,000
			10~	132	416,900,000	41,690,000	41,690,000	41,690,000	41,690,000	41,690,000	41,690,000	41,690,000	125,070,000
			116동(2호)	11	429,400,000	42,940,000	42,940,000	42,940,000	42,940,000	42,940,000	42,940,000	42,940,000	128,820,000
59.9161B	59B	101동(1.3호) 103동(3호) 106동(1호) 114동(2.5호) 115동(2호)	1	4	368,900,000	36,890,000	36,890,000	36,890,000	36,890,000	36,890,000	36,890,000	36,890,000	110,670,000
			2	7	377,100,000	37,710,000	37,710,000	37,710,000	37,710,000	37,710,000	37,710,000	37,710,000	113,130,000
			3	7	385,300,000	38,530,000	38,530,000	38,530,000	38,530,000	38,530,000	38,530,000	38,530,000	115,590,000
			4	7	393,500,000	39,350,000	39,350,000	39,350,000	39,350,000	39,350,000	39,350,000	39,350,000	118,050,000
			5~9	34	401,70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120,510,000
			10~	27	409,900,000	40,990,000	40,990,000	40,990,000	40,990,000	40,990,000	40,990,000	40,990,000	122,970,000

59.9115C	59C	102동(1,3호) 103동(1호) 105동(1,3호) 106동(3,6호) 109동(1호)	1	6	368,400,000	36,840,000	36,840,000	36,840,000	36,840,000	36,840,000	36,840,000	36,840,000	110,520,000	
			2	8	376,600,000	37,660,000	37,660,000	37,660,000	37,660,000	37,660,000	37,660,000	37,660,000	37,660,000	112,980,000
			3	8	384,800,000	38,480,000	38,480,000	38,480,000	38,480,000	38,480,000	38,480,000	38,480,000	38,480,000	115,440,000
			4	8	393,0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117,900,000
			5~9	40	401,200,000	40,120,000	40,120,000	40,120,000	40,120,000	40,120,000	40,120,000	40,120,000	40,120,000	120,360,000
			10~	43	409,300,000	40,930,000	40,930,000	40,930,000	40,930,000	40,930,000	40,930,000	40,930,000	40,930,000	122,790,000
59.7756D	59D	114동(6호) 115동(4호)	2	2	383,200,000	38,320,000	38,320,000	38,320,000	38,320,000	38,320,000	38,320,000	38,320,000	114,960,000	
			3	2	391,600,000	39,160,000	39,160,000	39,160,000	39,160,000	39,160,000	39,160,000	39,160,000	117,480,000	
			4	2	399,900,000	39,990,000	39,990,000	39,990,000	39,990,000	39,990,000	39,990,000	39,990,000	119,970,000	
			5~9	10	408,200,000	40,820,000	40,820,000	40,820,000	40,820,000	40,820,000	40,820,000	40,820,000	122,460,000	
			10~	1	416,600,000	41,660,000	41,660,000	41,660,000	41,660,000	41,660,000	41,660,000	41,660,000	124,980,000	
84.9830A	84A	101동(5호) 102동(5호) 103동(5,6호) 104동(2,3,4호) 105동(5,6호) 107동 108동(2,3호) 109동(3,4,5,6호) 111동 112동(1,2,3,4호)	1	22	515,100,000	51,510,000	51,510,000	51,510,000	51,510,000	51,510,000	51,510,000	51,510,000	154,530,000	
			2	25	526,500,000	52,650,000	52,650,000	52,650,000	52,650,000	52,650,000	52,650,000	52,650,000	157,950,000	
			3	25	537,900,000	53,790,000	53,790,000	53,790,000	53,790,000	53,790,000	53,790,000	53,790,000	161,370,000	
			4	25	549,400,000	54,940,000	54,940,000	54,940,000	54,940,000	54,940,000	54,940,000	54,940,000	164,820,000	
			5~9	123	560,800,000	56,080,000	56,080,000	56,080,000	56,080,000	56,080,000	56,080,000	56,080,000	168,240,000	
			10~	101	572,300,000	57,230,000	57,230,000	57,230,000	57,230,000	57,230,000	57,230,000	57,230,000	171,690,000	
			104동(2호)	15	589,400,000	58,940,000	58,940,000	58,940,000	58,940,000	58,940,000	58,940,000	58,940,000	176,820,000	
			84.7363B	84B	104동(1호)	1	1	508,100,000	50,810,000	50,810,000	50,810,000	50,810,000	50,810,000	50,810,000
			2	1	519,40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155,820,000		
			3	1	530,70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159,210,000		
			4	1	542,0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62,600,000		
			5~9	5	553,300,000	55,330,000	55,330,000	55,330,000	55,330,000	55,330,000	55,330,000	165,990,000		
			10~	6	564,600,000	56,460,000	56,460,000	56,460,000	56,460,000	56,460,000	56,460,000	169,380,000		
84.8556C	84C	102동(6호)	1	1	508,100,000	50,810,000	50,810,000	50,810,000	50,810,000	50,810,000	50,810,000	50,810,000	152,430,000	
			2	1	519,40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51,940,000	155,820,000	
			3	1	530,70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53,070,000	159,210,000	
			4	1	542,0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54,200,000	162,600,000	
			5~9	5	553,300,000	55,330,000	55,330,000	55,330,000	55,330,000	55,330,000	55,330,000	55,330,000	165,990,000	
			10~	6	564,600,000	56,460,000	56,460,000	56,460,000	56,460,000	56,460,000	56,460,000	56,460,000	169,380,000	
84.4453D	84D	101동(6호) 108동(1호)	1	2	506,700,000	50,670,000	50,670,000	50,670,000	50,670,000	50,670,000	50,670,000	50,670,000	152,010,000	
			2	2	518,0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51,800,000	155,400,000	
			3	2	529,300,000	52,930,000	52,930,000	52,930,000	52,930,000	52,930,000	52,930,000	52,930,000	158,790,000	
			4	2	540,500,000	54,050,000	54,050,000	54,050,000	54,050,000	54,050,000	54,050,000	54,050,000	162,150,000	
			5~9	10	551,800,000	55,180,000	55,180,000	55,180,000	55,180,000	55,180,000	55,180,000	55,180,000	165,540,000	
			10~	9	563,0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168,900,000	
84.9478E	84E	111동(3호)	12	1	615,0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61,500,000	184,500,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총·타입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인지세,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주거전용,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면적 등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추후 안내예정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추후 안내 예정
중도금, 잔금			

- ※ 세대별 가상계좌는 계약 기간 도래 전 세대별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이며, 계약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4.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품목

-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 ※ 발코니 확장 미공사 시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불가합니다.
- ※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의 일정, 계약내용, 납부일정(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납부계좌 및 제품에 관한 사항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 VAT 포함]

구 분	주택형(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 고
			계약 시	2025.09.22	입주지정일	
발코니 확장비	59A	1,752,000	175,200	175,200	1,401,600	
	59B	1,348,000	134,800	134,800	1,078,400	
	59C	982,000	98,200	98,200	785,600	
	59D	1,435,000	143,500	143,500	1,148,000	
	84A	3,425,000	342,500	342,500	2,740,000	
	84B	2,223,000	222,300	222,300	1,778,400	
	84C	1,297,000	129,700	129,700	1,037,600	
	84D	2,671,000	267,100	267,100	2,136,800	
	84E	3,692,000	369,200	369,200	2,953,600	

-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 및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입니다.
- ※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 자체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간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조명기구, 배선기구, 통합스위치 등의 설치 수량 및 위치, 사양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외부 창호, 확장형 주방가구, 확장 부위 마감 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다용도실, 실외기실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 및 슬래브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 및 슬래브는 단열을 위하여 제공된 홍보자료(홈페이지, 안내책자 등)에 비해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등은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를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은 사업주체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확장 및 평면운선, 특화품목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스위치류, 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 (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현장 입찰결과에 의해 제조사 및 브랜드, 개폐방향, 프레임 유리, 손잡이등의 사양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 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인테리어,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시 외관구성상 일부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되거나 선홍통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추후 안내 예정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예정	추후 안내 예정
중도금, 잔금			

-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는 아파트 공급대금 및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세대별 가상계좌는 계약 기간 도래 전 세대별 부여될 예정이며, 지정된 계약 기간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향후 중도금, 잔금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 공사 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세대별 분양대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이전 고지할 예정이며, 계약 시 공급계약서에 명기할 예정입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발코니 확장 공사 비용은 아파트 분양대금과 별도로,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발코니확장 계약과 별개이며 계약일정 및 내용, 납부일정 및 계좌, 제품 상세내용 등은 추후 별도로 분양계약자에게 공지 후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 추가 선택품목 판매가격은 공동주택 공급금액 및 발코니 확장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1) 시스템에어컨(일반형/프리미엄)

[단위 : 원 / VAT포함]

구 분	설치위치	주택형 (타입)	업체명	판매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5.09.22	입주 시
일반형	선택1	거실+침실1(2대)	LG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400,000	400,000	3,200,000
	선택2	거실+주방+침실1(3대)		5,100,000	510,000	4,080,000	
				5,600,000	560,000	4,480,000	
	선택3	거실+침실1,2,3(4대)		6,000,000	600,000	4,800,000	
				6,600,000	660,000	5,280,000	
	선택4	거실+침실1,2,3+알파룸(5대)		7,700,000	770,000	6,160,000	
				7,700,000	770,000	6,160,000	
	선택5	거실+침실1,2,3+베타룸(5대)		7,300,000	730,000	5,840,000	
				7,700,000	770,000	6,160,000	
	선택6	거실+주방+침실1,2,3(5대)		7,300,000	730,000	5,840,000	
				7,700,000	770,000	6,160,000	
	선택7	거실+주방+침실1,2,3+알파룸(6대)		8,800,000	880,000	7,040,000	

프리미엄	선택8	거실+주방+침실1,2,3,4(6대)	84A	8,800,000	880,000	880,000	7,040,000
	선택9	거실+침실1,2,3+알파룸+베타룸(6대)	84D	8,800,000	880,000	880,000	7,040,000
	선택1	거실+침실1(2대)	59A,B,C,D	4,100,000	410,000	410,000	3,280,000
			84B,C,D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선택2	거실+주방+침실1(3대)	84A	5,500,000	550,000	550,000	4,400,000
			84E	6,000,000	600,000	600,000	4,800,000
	선택3	거실+침실1,2,3(4대)	59A,B,C,D	6,300,000	630,000	630,000	5,040,000
			84B,C,D	7,000,000	700,000	700,000	5,600,000
	선택4	거실+침실1,2,3+알파룸(5대)	84B,C	8,100,000	810,000	810,000	6,480,000
	선택5	거실+침실1,2,3+베타룸(5대)	84D	8,100,000	810,000	810,000	6,480,000
	선택6	거실+주방+침실1,2,3(5대)	84A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84E	8,100,000	810,000	810,000	6,480,000
	선택7	거실+주방+침실1,2,3+알파룸(6대)	84E	9,200,000	920,000	920,000	7,360,000
	선택8	거실+주방+침실1,2,3,4(6대)	84A	9,200,000	920,000	920,000	7,360,000
	선택9	거실+침실1,2,3+알파룸+베타룸(6대)	84D	9,200,000	920,000	920,000	7,360,000

※ 시스템에어컨 선택4(84B, 일반형/프리미엄)은 가변공간 옵션 선택 시 선택이 불가함
 ※ 시스템에어컨 선택8(84A, 일반형/프리미엄)은 가변공간 옵션 선택 시 선택이 불가함

2) 빌트인 가전

[단위 : 원 / VAT포함]

품목	주택형 (타입)	제품명	업체명	판매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5.09.22	입주 시
천정형 제습기(드레스룸)	전 주택형	CDD-600B	코스텔	800,000	80,000	80,000	640,000
전기오븐	전 주택형	MZ941CLCAT.CKOR	LG	800,000	80,000	80,000	640,000
		MZ385EBT1.CKOR		400,000	40,000	40,000	320,000
식기세척기	전 주택형	DIE6PT	LG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DIB22S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전기쿡탑(인덕션)	전 주택형	CIRS-FL301FB-S	쿠쿠	500,000	50,000	50,000	400,000
		BEI3WWQLBI		1,200,000	120,000	120,000	960,000
냉장고+김치냉장고	59A,B,C,D	BC1K2AAC(김치)+BC1F2AA(냉동)+BC1L2AA(냉장)	LG Objet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BC4S1AA1(냉장/냉동 4도어)+BC3K1AA1(김치 3도어)		7,400,000	740,000	740,000	5,920,000
	84A,B,C,D,E	BC1K2AAC(김치)+BC1F2AA(냉동)+BC1L2AA(냉장)		7,100,000	710,000	710,000	5,680,000
	BC4S1AA1(냉장/냉동 4도어)+BC3K1AA1(김치 3도어)	8,000,000		800,000	800,000	6,400,000	
와인냉장고	84A,E	R-WZ46JKX	LG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 천정형 제습기(침실1 드레스룸)는 수납 패키지 2 선택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84B 가변공간 옵션 선택 시 드레스룸2에는 설치되지 않음
 ※ 전기쿡탑(인덕션) 옵션 선택 시 가스배관은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제공되고, 주방용 가스배관은 미설치됨
 ※ 84 타입의 경우 냉장고+김치냉장고(3도어 / 4+3도어) 선택 시 키큰장이 시공되며, 59 타입은 냉장고+김치냉장고(4+3도어) 선택 시 키큰장이 시공됨
 ※ 냉장고+김치냉장고 선택 시 시공되는 키큰장은 타입 및 모델에 따라 사이즈가 상이하
 ※ 와인냉장고는 84A '가변 공간 옵션 1' / 84E '가변 공간 옵션 4' 선택 시 가능함

3) 기타품목

[단위 : 원 / VAT포함]

품목	주택형 (타입)	설치 위치 및 내용	판매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5.09.22	입주 시
현관중문	전 주택형	현관(1FIX+2DOOR)+신발장 하부 조명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주방 아일랜드형 식탁 1	59B,C, 84B,C,D	아일랜드 식탁 상판 - 엔지니어드스톤	700,000	70,000	70,000	560,000
			900,000	90,000	90,000	720,000
주방 아일랜드형 식탁 2	59B,C, 84B,C,D	아일랜드 식탁 상판 - 세라믹 타일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파우더룸 슬라이딩 도어	전 주택형	침실1	600,000	60,000	60,000	480,000
침실2 불박이장	59A,B,D,84E, 59C,84A,B,C,D	침실2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복도 팬트리 2	84C	복도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베타룸 슬라이딩 도어	84D	베타룸	700,000	70,000	70,000	560,000
복도 팬트리+알파룸 슬라이딩 도어	84E	복도, 알파룸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거실 패키지	59A	세라믹 아트월, 시트판넬(스톤보드), 가구 FIX 판넬, 복도1면, 쇼파 뒷 벽 픽처레일, 거실 아트월면 단천장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59D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84D		8,200,000	820,000	820,000	6,560,000
	59B		5,400,000	540,000	540,000	4,320,000
	59C	4,700,000	470,000	470,000	3,760,000	
	84A	세라믹 아트월, 시트판넬(스톤보드), 복도1면, 쇼파 뒷 벽 픽처레일, 거실 아트월면 단천장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84B		6,200,000	620,000	620,000	4,960,000
	84C		5,800,000	580,000	580,000	4,640,000
84E	8,400,000		840,000	840,000	6,720,000	
주방 벽/상판 마감재	59A,B,C,D	주방 벽, 상판 마감 - 세라믹 타일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84A,B,C,D		3,300,000	330,000	330,000	2,640,000
	84E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라이프업 패키지	59A,B,C,D	주방 상부장 하부 조명, 주방 상판 하부 LED 조명, 주방 무선충전 매입 콘센트, 발코니 전동빨래건조대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84A,B,C,D,E		1,400,000	140,000	140,000	1,120,000
주방 패키지 1	59A,D	라이프업 패키지+유리 플립탑(매립형 상하부 조명), 독립형 후드, 주방 우물천장 내 템보보드, 주방마감재(엔지니어드스톤)	4,400,000	440,000	440,000	3,520,000

품목	주택형(타입)	설치 위치 및 내용	판매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5.09.22	입주 시
주방 패키지 2	59B,C	라이프업 패키지+유리 플랩장(매립형 상하부 조명), 독립형 후드, 주방마감재(엔지니어드스톤)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59A,D	라이프업 패키지+유리 플랩장(매립형 상하부 조명), 독립형 후드, 주방 우물천장 내 템바보드, 주방마감재(세라믹타일)	7,700,000	770,000	770,000	6,160,000
주방 패키지 3	59B,C	라이프업 패키지+유리 플랩장(매립형 상하부 조명), 독립형 후드, 주방마감재(세라믹 타일)	7,400,000	740,000	740,000	5,920,000
	84A	라이프업 패키지+유리 플랩장(매립형 상하부 조명), 독립형 후드, 아일랜드 장식장, 주방 우물천장 내 템바보드, 주방마감재(엔지니어드스톤) - 가변공간옵션 미선택 시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84E	라이프업 패키지+유리 플랩장(매립형 상하부 조명), 독립형 후드, 아일랜드 장식장, 주방 우물천장 내 템바보드, 주방마감재(엔지니어드스톤) - 가변공간옵션 선택 시	4,100,000	410,000	410,000	3,280,000
	84A	라이프업 패키지+유리 플랩장(매립형 상하부 조명), 독립형 후드, 아일랜드 장식장, 주방 우물천장 내 템바보드, 주방마감재(엔지니어드스톤) - 가변공간옵션 선택 시	5,100,000	510,000	510,000	4,080,000
주방 패키지 4	84E	라이프업 패키지+유리 플랩장(매립형 상하부 조명), 독립형 후드, 아일랜드 장식장, 주방 우물천장 내 템바보드, 주방마감재(엔지니어드스톤) - 가변공간옵션 선택 시	4,200,000	420,000	420,000	3,360,000
	84B,C,D	라이프업 패키지+유리 플랩장(매립형 상하부 조명), 독립형 후드, 아일랜드 장식장, 주방마감재(엔지니어드스톤)	4,700,000	470,000	470,000	3,760,000
	84A	라이프업 패키지+유리 플랩장(매립형 상하부 조명), 독립형 후드, 아일랜드 장식장, 주방 우물천장 내 템바보드, 주방마감재(세라믹 타일) - 가변공간옵션 미선택 시	9,200,000	920,000	920,000	7,360,000
	84E	라이프업 패키지+유리 플랩장(매립형 상하부 조명), 독립형 후드, 아일랜드 장식장, 주방 우물천장 내 템바보드, 주방마감재(세라믹 타일) - 가변공간옵션 미선택 시	7,200,000	720,000	720,000	5,760,000
	84A	라이프업 패키지+유리 플랩장(매립형 상하부 조명), 독립형 후드, 아일랜드 장식장, 주방 우물천장 내 템바보드, 주방마감재(세라믹 타일) - 가변공간옵션 선택 시	9,500,000	950,000	950,000	7,600,000
수납패키지 1 (화장대 분리형)	84E	라이프업 패키지+유리 플랩장(매립형 상하부 조명), 독립형 후드, 아일랜드 장식장, 주방 우물천장 내 템바보드, 주방마감재(세라믹 타일) - 가변공간옵션 선택 시	7,400,000	740,000	740,000	5,920,000
	84B,C,D	라이프업 패키지+유리 플랩장(매립형 상하부 조명), 독립형 후드, 아일랜드 장식장, 주방마감재(세라믹 타일)	8,400,000	840,000	840,000	6,720,000
	59A,D,84A	침실1 드레스룸 벽 패널 조명형 선반(슬라이딩도어 별도 선택옵션임)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59B,C	침실1 드레스룸 벽 패널 조명형 선반(슬라이딩도어 별도 선택옵션임)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84B,C,D	59A,D / 84A,E 타입의 경우 벽패널형 걸이형 선반이 일부 포함됨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수납패키지 2 (화장대 통합형)	84E	침실1 드레스룸 벽 패널 조명형 선반(슬라이딩도어 별도 선택옵션임)	4,300,000	430,000	430,000	3,440,000
	59A	침실1 드레스룸 벽 패널 조명형 선반+파우더룸 슬라이딩 도어+디자인 파우더장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59B	침실1 드레스룸 벽 패널 조명형 선반+파우더룸 슬라이딩 도어+디자인 파우더장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59C	침실1 드레스룸 벽 패널 조명형 선반+파우더룸 슬라이딩 도어+디자인 파우더장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59D	침실1 드레스룸 벽 패널 조명형 선반+파우더룸 슬라이딩 도어+디자인 파우더장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84A	침실1 드레스룸 벽 패널 조명형 선반+파우더룸 슬라이딩 도어+디자인 파우더장	2,400,000	240,000	240,000	1,920,000
	84B	침실1 드레스룸 벽 패널 조명형 선반+파우더룸 슬라이딩 도어+디자인 파우더장	2,700,000	270,000	270,000	2,160,000
	84C	침실1 드레스룸 벽 패널 조명형 선반+파우더룸 슬라이딩 도어+디자인 파우더장	4,500,000	450,000	450,000	3,600,000
	84D	침실1 드레스룸 벽 패널 조명형 선반+파우더룸 슬라이딩 도어+디자인 파우더장	4,600,000	460,000	460,000	3,680,000
	84E	침실1 드레스룸 벽 패널 조명형 선반+파우더룸 슬라이딩 도어+디자인 파우더장	5,200,000	520,000	520,000	4,160,000
바닥마감재특화	59A,B,C,D	전체 광목 강마루(143×1200×7.5T)	500,000	50,000	50,000	400,000
	84A,B,C,D,E	전체 광목 강마루(143×1200×7.5T)	700,000	70,000	70,000	560,000
욕실 스타일업 1 (공용욕실)	전 주택형	욕실 벽, 욕조 에이프론 : 포세린타일(600*600), 수납형 욕조수전, 수전/약세서리 니켈 무광 마감, 비데 일체형 양변기, 복합 환풍기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욕실 스타일업 2 (부부욕실)	전 주택형	욕실 벽 : 포세린타일(600*600), 샤워부스 : 흑니켈 프레임, 캔버스 샤워수전, 수전/약세서리 니켈 무광 마감, 비데 일체형 양변기, 복합 환풍기	1,800,000	180,000	180,000	1,440,000
가변공간 옵션 1	84A	수납 강화형1(홈바형) : 홈바+팬트리+장식장+현관창고(신설)+주방 우물천장 확장	6,900,000	690,000	690,000	5,520,000
가변공간 옵션 2	84A	수납 강화형2(알파룸형) : 알파룸+슬라이딩 도어+장식장+복도 팬트리+주방 우물천장 확장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가변공간 옵션 3	84B	수납 강화형 : 복도 팬트리+침실2 드레스룸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가변공간 옵션 4	84E	수납 강화형(홈바형) : 신발장+와이드 주방+홈바+주방 우물천장 확장	3,900,000	390,000	390,000	3,120,000

- ※ 주방 아일랜드 식탁 1(엔지니어드스톤) 선택 시 주방마감재 및 주방 패키지 2, 4(세라믹 타일) 선택 불가
- ※ 거실 패키지 중 84A는 가변공간 옵션 1, 2 선택 시, 84C는 수납 패키지 1, 2 선택 시, 84E는 가변공간 옵션 또는 복도팬트리 옵션 선택 시 가구 FIX 패널이 설치됨
- ※ 주방 패키지 선택 시 전기쿡탑(인덕션) 선택 필수 조건임
- ※ 주방 패키지 선택 시 가스배관은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제공되고, 주방용 가스배관은 미설치됨
- ※ 주방 패키지 1~4와 라이프업 패키지 중복 선택 불가
- ※ 주방 패키지 2, 4 선택 시 주방마감재 중복 선택 불가
- ※ 수납 패키지 2 선택 시 파우더룸 슬라이딩 도어 중복 선택 불가
- ※ 가변공간 옵션 1, 2 중복 선택 불가(84A)
- ※ 가변공간 옵션 1(84A), 4(84E) 선택 시에만 와인냉장고 선택 가능

■ 추가 선택품목 옵션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우리은행	1005-604-760699	금호건설 주식회사	입금 시 호실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중도금, 잔금				

-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는 아파트 공급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시 - 101동 1502호 계약자 → '1011502홍길동' / '입금자란 기재 시 문자 수 제한이 있을 경우 동·호수를 우선 기재하고 성명은 기재 가능한 문자까지 최대한 기재)
- ※ 상기 계좌에 납부하지 않은 추가 선택품목 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지정된 분양대금(중도금·잔금) 납부일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 옵션 대금은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용과 별도로,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관련 유의사항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환기 디퓨저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정 배관 위치,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 시스템에어컨은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이상의 타사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는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일부 제외 및 추가가 불가합니다.
-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84E 실외기는 테라스 설치),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냉매배관 및 에어컨용 콘센트가 시공됩니다.
-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과 침실1에 기본 제공되는 냉매배관 및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으며, 상기 판매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 ※ 빌트인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등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가구 수납장이 설치됩니다.
- ※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미선택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를 설치 할 수 있는 장이 제공되며 가구 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 빌트인 냉장고, 김치냉장고 미선택시, 일반 냉장고, 김치냉장고가 장에 비하여 다소간 튀어 나올 수 있습니다.
- ※ 전기쿡탑 옵션품목 미선택시에는 3구형 가스쿡탑이 설치됩니다.
- ※ 오븐제 빌트인 냉장고는 배치 순서, 문열림 방향, 도어 마감 재질 및 색상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평면선택 옵션에 따라 마감재의 수량 및 적용되는 제품사양이 변경될 수 있으며, 차액에 대해서는 평면옵션 비용 산출 시 반영되어 있습니다.
- ※ 전기쿡탑 옵션, 주방패키지 옵션 선택 시 가스 배관은 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제공되고 주방용 가스배관은 미설치됩니다. 이 경우 가스 쿡탑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옵션 비용은 해당 금액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5. 기본선택품목 (마이너스옵션)

■ 공통사항

- ※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 천장, 일반가구, 주방, 욕실, 창호, 조명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

구 분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도 시공되는 품목
① 문	문틀(상부마감판,문선,목재공틀 포함), 문짝, 도어록, 경첩, 도어체크, 디지털도어록(현관), 실외기실 문	욕실문틀 하부 씌,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일반형 도어록), 방화문틀 및 문짝, 기본형 PL창호, 주방 도어, 실외기그릴창
② 바닥	강마루, 갈레반이, 현관바닥재(바닥재,마루귀틀), 발코니바닥타일(타일붙임 몰탈포함, 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방수(방수 시공부위만 해당), 바닥난방+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③ 벽	경량벽체(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는 제외), 벽지(초배포함), 벽체마감(아트월, 타일 등)	방, 거실, 주방 등 각 실을 구분하는 벽체, 석고보드, 단열재, 발코니 벽 도장, 거실 세대단말기(Wall Pad)
④ 천장	벽지(초배포함), 우물천장, 등박스, 반자돌림, 무선AP	경량천장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 도장, 환기시설, 스피커
⑤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욕실전등, 인조대리석, 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천장재(천장틀포함), 샤워부스, 욕실팬, 비상콜, 욕실수납장, 액세서리 일체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배관-배선,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⑥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레인지후드,음식물탈수기), 벽타일, 액세서리류 일체, 수전(절수기 포함)	석고보드, 소방관련 시설, 기계설비 배관, 배기덕트
⑦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⑧ 일반가구	신발장, 팬트리(시스템 선반 포함), 드레스룸장(시스템선반 포함), 반침가구(문짝포함), 선반을 포함한 수납장, 화장대 등 가구일체	-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타입	59A	59B	59C	59D	84A	84B	84C	84D	84E
금액	27,050,328	27,413,653	26,758,066	28,437,232	35,863,384	35,987,241	35,984,117	35,887,382	36,588,239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세대별 공급금액(분양가)에서 상기 마이너스옵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금액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유의사항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옵션은 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완료 후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에만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마이너스옵션부분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시 소방시설 완공검사와 관련된 품목은 반드시 소방시설 완공검사 전까지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간 시설을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시공 및 하자보수가 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고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 공사 계약 시 하자행보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구조체 및 마감공사 품목, 창호·방화문, 전기배관 등 시설물,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시행자 시공분 시설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한 후 마이너스옵션 선택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인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의 의무는 입주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상부장 및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가스쿱탑은 가스관련 규정 개정으로 과열방지장치 부착 제품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시공 시 소방관련시설물(자동식소화기 등)을 설치하기 위한 선행공사(렌지후드 등)는 사업주체가 원하는 시기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미설치로 인한 미준공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옵션 세대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으로 인한 자재 등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쓰레기 미처리로 인한 청소비용은 계약자에게 청구됩니다.

II 신청기준 (무주택, 소득·자산)

1. 공급구분별 지역우선 배정 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의거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해당지역 거주자의 미달물량은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 체류기간이 연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외에 거주한 기간(입국 후 7일 이내 동일 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다자녀·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지역 우선공급 기준**
<표1>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 공급기준

기준일	지역구분	지역 우선공급 거주 입력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3.21.(금))	① 해당지역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계속 거주하시는분
	② 기타지역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시는 분
- ※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때 지역우선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주택에 가입하여 공급 유형별 저축요건(기간 및 납입회차)을 충족한 분은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

구분	내용
적용대상	■ 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
공급신청 자격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는 공공분양 주택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의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에 대해 부부에 한하여 중복신청 가능하며, 부부 모두 당첨될 경우 신청 접수일이 앞선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으로 인정)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합니다.(단, 예비신혼부부 제외)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대주만 가능 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무주택 여부 판단대상 (분양권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합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p> <p>[무주택세대구성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예) 전혼자녀 등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p> </div>

	<p>[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제53조 제6호의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예비신혼부부)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어야함. 단,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경우에는 예외로 함.</p>																	
<p>주택의 범위 (분양권등 포함)</p>	<p>■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분양권 등)의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p>																	
<p>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분양권등 포함)</p>	<p>■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단, 건물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 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분양권 등의 공급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4)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된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5)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나,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날(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관계 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 신청자 및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두 차례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p>																	
<p>비고</p>	<p>■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에도 제53조 제9호의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의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유주택자)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p> </div> <p>①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 및 분양권등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⑥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⑦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건물(중천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⑨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20%;">조항</th> <th style="width: 30%;">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 <th style="width: 15%;">주거전용면적</th> <th style="width: 15%;">수도권</th> <th style="width: 20%;">비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제53조제9호가목</td> <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 <td>60㎡ 이하</td> <td>1억 6천만원</td> <td>1억원</td> </tr> <tr> <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 <td>단독주택</td> <td rowspan="3">85㎡ 이하</td> <td rowspan="3">5억원</td> <td rowspan="3">3억원</td> </tr> <tr> <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 </tr> <tr> <td>도시형 생활주택</td> </tr> </tbody> </table> <p>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⑪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p>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p>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23.5.10) 전에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p> <p>④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함. 이하 이 호에서 같음)일 것</p> <p>나.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p> <p>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p>
--	--

3. 자산보유기준

구분	내용																							
적용대상	<p>■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p> <p>■ 일반공급 : 전용59㎡형 일반공급 신청자</p>																							
검토대상	<p>■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p> <p>※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p> <p>※ 다만,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여 자산산정 대상에서 제외</p>																							
자산보유기준 적용	<p>■ 사업주체는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되신 분의 보유자산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확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금액을 당사자의 자산금액으로 간주합니다.</p>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및 전용 59㎡형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p> <p>※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완화된 자산보유기준으로 산정되니 아래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 자산보유기준 검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건물+토지) 가액의 총합과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p> <p>※ 부동산(건물 + 토지) 및 자동차를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가액 중 해당지분가액(단, 동일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할 때에는 지분합계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소액 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과 그 주택의 부속 토지'는 자산보유기준 적용대상이 됩니다.</p>																							
자산보유기준	<p>■ 자산보유 조사방법</p> <p>- 당첨자(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의 자산 관련 자료는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일괄 조회할 예정입니다.</p> <p>■ 조사대상자의 의무</p> <p>- 당사에서 당첨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자산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당첨자 서류 제출 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불가능합니다.</p> <p>■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10%;">구분</th> <th style="width: 10%;">자산보유기준</th> <th style="width: 80%;">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부동산 (건물+토지)</td> <td rowspan="2">215,500천원 이하</td> <td> <p>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left: 2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건축물 종류</th> <th style="width: 90%;">지방 세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rowspan="2">건 물</td> <td>건 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r> <td>시설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td> </tr> <tr> <td>토 지</td> <td> <p>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p> <p>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p>• 건축물 가액에 토지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td> </tr> <tr> <td>자동차</td> <td>38,030천원 이하</td> <td> <p>•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공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공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td> </tr> </tbody> </table>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p>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left: 2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건축물 종류</th> <th style="width: 90%;">지방 세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rowspan="2">건 물</td> <td>건 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r> <td>시설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 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 지	<p>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p> <p>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p>• 건축물 가액에 토지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자동차	38,030천원 이하	<p>•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공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공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p>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left: 20px;"> <thead> <tr> <th style="width: 10%;">건축물 종류</th> <th style="width: 90%;">지방 세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 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rowspan="2">건 물</td> <td>건 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r> <td>시설물</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 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 세징 시가표준액																					
주 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건 물	건 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 지	<p>토지 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p> <p>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p>• 건축물 가액에 토지 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 토지도 토지 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자동차	38,030천원 이하	<p>•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등록 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함,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공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공공자로서 상이 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p>■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10%;">적용유형</th> <th style="width: 40%;">부동산(건물+토지)</th> <th style="width: 50%;">자동차</th> </tr> </thead> <tbody> <tr> <td>①</td> <td>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 - 10%p 가산</td> <td>237,050천원 이하 / 41,883천원 이하</td> </tr> <tr> <td>②</td> <td>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2명 이상 있는 경우 - 20%p 가산</td> <td>258,600천원 이하 / 45,636천원 이하</td> </tr> <tr> <td>③</td> <td>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이고, 2023.03.28.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p 가산</td> <td>258,600천원 이하 / 45,636천원 이하</td> </tr> </tbody> </table> <p>※ (출산가구 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p> <p>■ 부동산(건물+토지) 공시가격 확인 방법</p>			적용유형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①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 - 10%p 가산	237,050천원 이하 / 41,883천원 이하	②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2명 이상 있는 경우 - 20%p 가산	258,600천원 이하 / 45,636천원 이하	③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이고, 2023.03.28.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p 가산	258,600천원 이하 / 45,636천원 이하										
적용유형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①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 - 10%p 가산	237,050천원 이하 / 41,883천원 이하																						
②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2명 이상 있는 경우 - 20%p 가산	258,600천원 이하 / 45,636천원 이하																						
③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이고, 2023.03.28.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20%p 가산	258,600천원 이하 / 45,636천원 이하																						

※ 방문 신청 :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확인
 ※ 온라인 조회 :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단, 당첨자 자격검증을 위한 소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출력한 단순 열람용 서류 인정불가

■ 차량기준가액 자료 출처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가격 적용기준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 자동차 출고(취득) 가격(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
 ※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취득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납부확인서 등에 표시된 과세표준액 확인 또는 해당 시, 군, 구청으로 문의
 ※ 경과 연수는 연식이 아닌 최초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
 예시) 자동차 등록증상 2024년식 자동차를 2023년도에 구입하여 등록하였으면 차량 기준가액에서 10%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정

4. 소득 기준

구분	내용								
적용대상	■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신생아 특별공급 신청자 ■ 일반공급 : 전용59㎡형 일반공급 신청자								
소득기준 적용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로 선정되신 분의 소득을 당첨자 서류접수 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표6>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출처”에 따라 조사 확정하게 되므로, 공고일 이후 변동된 소득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유형별(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생아 특별공급 및 전용59㎡ 일반공급) 신청자격 외에 아래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월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표4>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단위:원)								
		공급유형	구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다자녀 가구 (10%)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추첨(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노부모 부양 (5%)	우선공급(9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추첨(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생애 최초 (15%)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추첨(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신혼 부부 (10%)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배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764,250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추첨(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신생아 (20%)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일반공급(2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807,968	12,867,132	13,546,572	14,599,629	15,652,686	16,705,743	
	배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764,250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추첨(1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00%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할 예비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단, 특별공급 추첨제 청약 시 부부 중 1인만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유형별 우선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또는 일반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부적격 처리 됩니다.) ※ 8인 초과 가구 소득 기준 :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02,038원) 추가 ※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 가구 완화된 소득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칫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 ※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유형별 특별공급 월평균소득 기준 비율에 아래 구분에 따른 값을 가산한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									

적용유형		가산 비율
①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 있는 경우	10%p
②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2명 이상 있는 경우	20%p
③	20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만 1명이고, 2023.03.28. 전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20%p

※ **완화된 소득 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위:원)

구 분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90%	6,484,781	7,720,279	8,127,943	8,759,777	9,391,612	10,023,446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10%	7,925,843	9,435,897	9,934,153	10,706,395	11,478,636	12,250,878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50%	10,807,968	12,867,132	13,546,572	14,599,629	15,652,686	16,705,743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60%	11,528,499	13,724,941	14,449,677	15,572,938	16,696,198	17,819,459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70%	12,249,030	14,582,750	15,352,782	16,546,246	17,739,711	18,933,175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10%	15,131,155	18,013,985	18,965,201	20,439,481	21,913,760	23,388,04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220%	15,851,686	18,871,794	19,868,306	21,412,789	22,957,273	24,501,756

■ 가구원 수는 기본적으로 **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수**를 의미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청약 유형별 가구원 수 적용 기준
일반공급(전용59㎡형에 한함)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신생아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
생애최초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 단,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 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페이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상 **당첨자 및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본에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다만, 세대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구 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산정기준
일반공급(전용59㎡형에 한함)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노부모·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위 가구원 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주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 ※ 단, 세대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또는 거주불명 상태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준 초과 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 선정 제한, 해당 주택 무순위 대상으로 선정 불가 등))를 받게 됩니다

소득조사 및 부적격 소명방법

- 신청자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대하여 청약신청 전에 소득자료 출처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근로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아래 <표6>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각 소득별 소득 항목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표6> 조회대상 소득 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의 소득자료 출처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의 소득자료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될 수 있으며, 조회된 자료는 모두 해당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통보를 받은 분의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소득자료 출처기관 참조)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 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만일 소명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국민연금급여, 사학 퇴직연금급여, 공무원 퇴직연금급여, 국방부 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 보상급여 및 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등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시 근로소득을 조회한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상시 근로소득 자료 반영순위 (①건강보험공단→②근로복지공단→③국민연금공단→④한국장애인고용공단→⑤국세청)에 따라 선순위 기관의 조회결과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을 산정하므로, 반드시 위 순위에 따라 본인 및 세대의 소득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 예시 :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 자료상 월 소득이 200만원이고, ⑤국세청(종합소득) 자료상 월 소득이 190만원일 경우 소득자료 반영순위에 따라 ①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보수월액)의 소득자료를 적용합니다.
- 휴직자의 소득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된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건강보험 보수월액 등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당첨자의 입주자격 심사를 위해 조사대상자 전원의 소득에 관한 개인의 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원천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조사하여야 하므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조사대상자 전원이 동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별도 양식),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표6> 조회대상 소득항목 및 소득자료 출처

구 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반영순위 ① 국민건강보험공단(보수월액) ② 근로복지공단(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 ③ 국민연금공단(기준소득월액)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최저임금, 보수월액) ⑤ 국세청(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제외)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증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증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 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소득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 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보훈처 등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45조 공급세대수의 10% : 10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분</p> <p>① 무주택세대구성원(제35조 제1항 제12호 제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국민주택의 특별공급) 및 제45조(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에 따라, 아래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당첨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된 분</p> <p>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p>																			
	추천대상자	입주자저축 구비여부																		
	국가유공자, 장애인	필요 없음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중소기업근로자,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추천기관	<p>■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p> <p>■ 장애인 : 부산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울산광역시청 장애인 복지과, 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p> <p>■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p> <p>■ 중소기업근로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p> <p>■ 의사상자 : 부산광역시청 사회복지과</p> <p>■ 다문화가족 : 부산광역시청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p> <p>■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국민체육진흥공단</p> <p>■ 북한이탈주민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소</p> <p>■ 납북피해자 : 통일부 납북자대책팀</p>																			
당첨자 선정방법	<p>■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p> <p>■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p> <p>■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축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p> <p>■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이 특별공급 또는 일반공급에 중복 청약하여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기관추천 유형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세대)																			
	구분	59A		59B		59C		59D		84A		84B		84C		84D		합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확정	예비	
	국가유공자	6	30	2	10	1	5	-	-	10	50	1	5	1	5	1	5	22	110	
	장애인	부산광역시	8	40	2	10	3	15	1	5	3	15	-	-	-	-	-	-	17	85
		울산광역시	1	5	-	-	1	5	-	-	-	-	-	-	-	-	-	-	2	10
		경상남도	1	5	1	5	1	5	-	-	-	-	-	-	-	-	-	-	3	15
		소 계	10	50	3	15	5	25	1	5	3	15	-	-	-	-	-	-	22	110
	장기복무제대군인	2	10	1	5	-	-	-	-	2	10	-	-	-	-	-	-	-	5	25
	10년 이상 복무군인	6	30	1	5	1	5	-	-	4	20	-	-	-	-	-	-	-	12	60
	중소기업근로자	11	55	2	10	3	15	1	5	5	25	-	-	-	-	1	5	23	115	
	의사상자	1	5	-	-	-	-	-	-	1	5	-	-	-	-	-	-	-	2	10
	다문화가족	4	20	-	-	1	5	-	-	4	20	-	-	-	-	1	5	10	50	
	대한민국체육유공자	1	5	-	-	-	-	-	-	1	5	-	-	-	-	-	-	-	2	10
	북한이탈주민	1	5	-	-	-	-	-	-	1	5	-	-	-	-	-	-	-	2	10
납북피해자	1	5	-	-	-	-	-	-	1	5	-	-	-	-	-	-	-	2	10	
합계	43	215	9	45	11	55	2	10	32	160	1	5	1	5	3	15	102	510		
유의사항	<p>■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대상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의 경우 본인이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p> <p>■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특별공급은 1회에 한하여 공급.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단서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p>																			

■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PC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 및 계약불가]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0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p> <p>① 만19세 미만인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2명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p> <p>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p> <p>③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p> <p>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단,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p>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90%) - ①지역 -> ②배점기준표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추첨공급(10%) - ①지역 -> ②추첨</p> <p>■ ①소득구분</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우선공급(90%)</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td> </tr> <tr> <td>2단계</td> <td>추첨공급(10%)</td> <td>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및 1단계 공급 낙첨자</td> </tr> </tbody> </table> <p>■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p> <p>■ ③배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평점요소</th> <th rowspan="2">총 배점</th> <th colspan="2">배점 기준</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기 준</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00</td> <td></td> <td></td> <td></td> </tr> <tr> <td rowspan="3">미성년 자녀수 (1)</td> <td rowspan="3">40</td> <td>4명 이상</td> <td>40</td> <td rowspan="3">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td> </tr> <tr> <td>3명</td> <td>35</td> </tr> <tr> <td>2명</td> <td>25</td> </tr> <tr> <td rowspan="3">영유아 자녀수 (2)</td> <td rowspan="3">15</td> <td>3명 이상</td> <td>15</td> <td rowspan="3">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td> </tr> <tr> <td>2명</td> <td>10</td> </tr> <tr> <td>1명</td> <td>5</td> </tr> <tr> <td rowspan="2">세대구성 (3)</td> <td rowspan="2">5</td> <td>3세대 이상</td> <td>5</td> <td rowspan="2">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td> </tr> <tr> <td>한부모 가족</td> <td>5</td> </tr> <tr> <td rowspan="3">무주택 기간 (4)</td> <td rowspan="3">20</td> <td>10년 이상</td> <td>20</td> <td rowspan="3">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td> </tr> <tr> <td>5년 이상 10년 미만</td> <td>15</td> </tr> <tr> <td>1년 이상 5년 미만</td> <td>10</td> </tr> <tr> <td rowspan="3">해당 시도 거주 기간 (5)</td> <td rowspan="3">15</td> <td>10년 이상</td> <td>15</td> <td rowspan="3">공급신청자가 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td> </tr> <tr> <td>5년 이상 ~ 10년 미만</td> <td>10</td> </tr> <tr> <td>1년 이상 ~ 5년 미만</td> <td>5</td> </tr> <tr> <td>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6)</td> <td>5</td> <td>10년 이상</td> <td>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td> </tr> </tbody> </table> <p>(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의 경우 : 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재혼의 경우 : 신청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배우자의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 가족 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p> <p>※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분 ② 미성년 자녀 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무주택 기간(4)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예1) 공고일 현재 30세인 신청자와 28세인 배우자가 모두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무주택기간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32세인 무주택인 신청자와 25세인 배우자(소유하던 주택을 22세에 처분)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기간 : 3년 ※ 해당 시도 거주기간(5) 산정 : 공급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 이후에 해당 시도에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 예1)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계속해서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10년 이상 예2) 공고일 현재 28세인 신청자 15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9년 예3) 공고일 현재 35세인 신청자 3년 전부터 해당 시도에 거주한 경우 : 3년</p>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9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2단계	추첨공급(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및 1단계 공급 낙첨자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 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4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 기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9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2단계	추첨공급(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및 1단계 공급 낙첨자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 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4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 기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주민등록표등본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소득기준	<p>-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공급유형</th> <th>기준</th> <th>3인 이하</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h>7인</th> <th>8인</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다자녀 가구</td> <td rowspan="2">우선공급 (90%)</td> <td>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td> <td>120% 이하</td> <td>8,646,374</td> <td>10,293,706</td> <td>10,837,258</td> <td>11,679,703</td> <td>12,522,149</td> <td>13,364,594</td> </tr> <tr> <td>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td> <td>130% 이하</td> <td>9,366,906</td> <td>11,151,514</td> <td>11,740,362</td> <td>12,653,012</td> <td>13,565,661</td> <td>14,478,311</td> </tr> <tr> <td>추첨공급 (10%)</td> <td>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td> <td>200% 이하</td> <td>14,410,624</td> <td>17,156,176</td> <td>18,062,096</td> <td>19,466,172</td> <td>20,870,248</td> <td>22,274,324</td> </tr> </tbody> </table> <p>※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2023.03.28.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분의 경우 월평균소득 기준을 10~20%p 가산하여 소득 적용이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추첨제 청약 시 부부 중 1인만 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 소득기준(120%)을 초과할 경우 부적격 처리 됩니다.)</p>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90%)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추첨공급 (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다자녀 가구	우선공급 (90%)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추첨공급 (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유의사항	<p>■ 자녀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출산</td> <td>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임신인 경우 임신진단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출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임신인 경우 임신진단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구분	내용																																																																					
출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임신인 경우 임신진단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p>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p> <p>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 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시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p>
입양	<p>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 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p> <p>또한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임신	<p>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p>
재혼	<p>-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 증빙을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됩니다.</p>

3.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공급세대수의 5% 범위 : 51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서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p> <p>①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중 세대주</p> <p>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p> <p>③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p> <p>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 배우자의 소득을 포함)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단,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p> <p>⑤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신청 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p> <p>- 예시1 : 공급신청자가 만 65세 이상 노부모(친모), 배우자 및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세대 분리 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시 무주택 검증 대상 전원이 무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함</p> <p>- 예시2 : 노부모, 본인(세대주이자 신청자), 1주택 소유자인 누나 및 누나의 배우자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누나는 본인과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므로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세대 구성원이 아닌 동거인으로 간주하여, 공급신청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함</p>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90%) - ①지역 → ②일반공급 우선공급 당첨자 선정기준(순위순차)으로 당첨자를 선정. 추첨공급(10%) - ①지역 → ②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p> <p>■ ①소득구분</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우선공급(90%)</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td> </tr> <tr> <td>2단계</td> <td>추첨공급(10%)</td> <td>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및 1단계 공급 낙첨자</td> </tr> </tbody> </table> <p>■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p> <p>■ ③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p> <table border="1"> <tr> <td colspan="2">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td> </tr> <tr> <td>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td> <td></td> </tr> <tr> <td>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td> <td></td> </tr>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9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2단계	추첨공급(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및 1단계 공급 낙첨자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9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2단계	추첨공급(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및 1단계 공급 낙첨자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소득기준	<p>-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공급유형</th> <th>기준</th> <th>3인 이하</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h>7인</th> <th>8인</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노부모 부양</td> <td>우선공급 (90%)</td> <td>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td> <td>120% 이하</td> <td>8,646,374</td> <td>10,293,706</td> <td>10,837,258</td> <td>11,679,703</td> <td>12,522,149</td> <td>13,364,594</td> </tr> <tr> <td></td> <td>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td> <td>130% 이하</td> <td>9,366,906</td> <td>11,151,514</td> <td>11,740,362</td> <td>12,653,012</td> <td>13,565,661</td> <td>14,478,311</td> </tr> <tr> <td></td> <td>추첨공급 (10%)</td> <td>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td> <td>200% 이하</td> <td>14,410,624</td> <td>17,156,176</td> <td>18,062,096</td> <td>19,466,172</td> <td>20,870,248</td> <td>22,274,324</td> </tr> </tbody> </table> <p>※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2023.03.28.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분의 경우 월평균소득 기준을 10~20%p 가산하여 소득 적용이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추첨제 청약 시 부부 중 1인만 소득이 있는 경우, 우선공급 소득기준(120%)을 초과할 경우 부적격 처리 됩니다.)</p>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90%)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추첨공급 (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노부모 부양	우선공급 (90%)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추첨공급 (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유의사항	<p>■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p> <p>-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급유형과 달리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음.</p> <p>■ 2023.11.1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에 의거 주택공급 신청자의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세대 내 1호 또는 1세대 보유 한정)</p>																																						

4.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5% 범위 : 153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서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서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⑤)을 모두 갖춘 분</p> <p>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p> <p>-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p> <p>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1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p> <p>③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임신 및 입양을 포함하며,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말함(신청자의 태아포함))가 있는 분</p> <p>④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p> <p>*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p> <p>**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p> <p>⑤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p> <p>⑥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한다)은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 수에 포함)별 가구당</p>

<p>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단, 부부 모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인 분</p> <p>■ 당첨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거주지역 →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p> <p>■ ①소득구분</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우선공급(70%)</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td> </tr> <tr> <td>2단계</td> <td>일반공급(20%)</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및 1단계 공급 낙첨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td> </tr> <tr> <td>3단계</td> <td>추첨공급(10%)</td> <td>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및 2단계 공급 낙첨자</td> </tr> </tbody> </table> <p>■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p>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7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2단계	일반공급(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및 1단계 공급 낙첨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3단계	추첨공급(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및 2단계 공급 낙첨자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7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2단계	일반공급(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및 1단계 공급 낙첨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3단계	추첨공급(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및 2단계 공급 낙첨자																																																				
<p>-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공급유형</th> <th>기준</th> <th>3인 이하</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h>7인</th> <th>8인</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생애 최초</td> <td rowspan="2">우선공급 (70%)</td> <td>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td> <td>100% 이하</td> <td>7,205,312</td> <td>8,578,088</td> <td>9,031,048</td> <td>9,733,086</td> <td>10,435,124</td> <td>11,137,162</td> </tr> <tr> <td>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td> <td>120% 이하</td> <td>8,646,374</td> <td>10,293,706</td> <td>10,837,258</td> <td>11,679,703</td> <td>12,522,149</td> <td>13,364,594</td> </tr> <tr> <td rowspan="2">일반공급 (20%)</td> <td>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td> <td>130% 이하</td> <td>9,366,906</td> <td>11,151,514</td> <td>11,740,362</td> <td>12,653,012</td> <td>13,565,661</td> <td>14,478,311</td> </tr> <tr> <td>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td> <td>140% 이하</td> <td>10,087,437</td> <td>12,009,323</td> <td>12,643,467</td> <td>13,626,320</td> <td>14,609,174</td> <td>15,592,027</td> </tr> <tr> <td>추첨공급 (10%)</td> <td>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td> <td>200% 이하</td> <td>14,410,624</td> <td>17,156,176</td> <td>18,062,096</td> <td>19,466,172</td> <td>20,870,248</td> <td>22,274,324</td> </tr> </tbody> </table> <p>※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2023.03.28.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분의 경우 월평균소득 기준을 10~20%p 가산하여 소득 적용이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추첨제 청약 시 부부 중 1인만 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소득기준(130%)을 초과할 경우 부적격 처리 됩니다.)</p> <p>※ (가구원수 선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선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p>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 최초	우선공급 (70%)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일반공급 (20%)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추첨공급 (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 최초	우선공급 (70%)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일반공급 (20%)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추첨공급 (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p>■ 본 아파트는 공공분양주택으로 *1인 가구의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p> <p>※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 후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청약신청 가능 주택형</th> <th>유의사항</th> </tr> </thead> <tbody> <tr> <td>1인 가구</td> <td>청약 불가</td> <td>1인 가구 청약 신청 시 부적격</td> </tr> </tbody> </table> <p>■ 자녀기준</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출산</td> <td>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임신인 경우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td> </tr> <tr> <td>입양</td> <td>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시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td> </tr> <tr> <td>임신</td> <td>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 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td> </tr> <tr> <td>재혼</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 증빙을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됩니다.</td> </tr> </tbody> </table> <p>■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 또는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제55조 단서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p>		구분	청약신청 가능 주택형	유의사항	1인 가구	청약 불가	1인 가구 청약 신청 시 부적격	구분	내용	출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임신인 경우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시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 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 증빙을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됩니다.																																					
구분	청약신청 가능 주택형	유의사항																																																				
1인 가구	청약 불가	1인 가구 청약 신청 시 부적격																																																				
구분	내용																																																					
출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임신인 경우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시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 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 증빙을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됩니다.																																																					

5. 신혼부부 특별공급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0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p> <p>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본 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이거나 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며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한부모가족(6세 이하(만7세 미만을 말함) 자녀(태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table border="1"> <tr> <td>신혼부부</td> <td>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준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td> </tr> <tr> <td>예비신혼부부</td> <td>청약 시 포함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td> </tr> <tr> <td>한부모가족</td> <td>「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td> </tr> </table>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준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포함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신혼부부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18.12.18.까지 기준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2순위로 청약 가능.					
	예비신혼부부	청약 시 포함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포함된 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을 입주 전까지 사업 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미증빙 또는 전 배우자와 재혼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 제2호 나목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며, 입주도 불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의미하며,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공고일 현재 자녀 유무 등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함.(한부모가족증명서를 통해 증명 가능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 단, 추후 사실혼 관계 등 한부모가족 자격 미달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또는 해제될 수 있음						
<p>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p> <p>③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p> <p>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3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p>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70%) - ①순위 → ②지역 → ③아래 배점항목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p> <p>일반공급(20%) - ①순위 → ②지역 → ③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p> <p>추첨공급(10%) - ①지역 → ②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p> <p>■ ①소득구분</p>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7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2단계	일반공급(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및 1단계 공급 낙첨자
3단계	추첨공급(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및 2단계 공급 낙첨자

■ ②순위

단계	내용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입양 포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만7세 미만을 말함)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 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20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④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가점기준		점수	비고
기준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이하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1	-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3	-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 해당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마. 혼인기간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에 한함)	3년 이하	3	- 한부모가족은 선택 불가
	3년 초과 5년 이하	2	
	5년 초과 7년 이하	1	
	7년 초과 또는 예비신혼부부	0	
바. 자녀의 나이 (한부모가족에 한함)	2세 이하(만3세 미만)	3	-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기준으로 하되, 태아인 경우 '자녀의 나이' 가점을 선택할 수 없음.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선택 불가
	2세 초과 4세 이하(만5세 미만)	2	
	4세 초과 6세 이하(만7세 미만)	1	

※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5,764,250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소득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자녀수' 산정방법

-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내 등재하는 미성년 자녀를 말함)를 입력하고, 한부모가족은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서 확인이 되는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예비)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마. 혼인기간(신혼부부에 한함) 관련

-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원)

소득구분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70%)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일반공급 (20%)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9,366,906	11,151,514	11,740,362	12,653,012	13,565,661	14,478,311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추첨공급 (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2023.03.28.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분의 경우 월평균소득 기준을 10~20%p 가산하여 소득 적용이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추첨제 청약 시 부부 중 1인만 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소득기준(130%)을 초과할 경우 부적격 처리 됩니다.)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청약 시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 소유, 자산 및 소득기준을 검증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청약 전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를 결정하시고 자격요건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자녀기준

구분	내용
출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 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1순위에 해당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 증빙을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 증빙을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6. 신생아 특별공급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 20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p> <p>① 2세 미만(2세가 되는날을 포함)의 자녀(태아 및 입양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p> <p>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p> <p>③ "<표2>의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p> <p>④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40%(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00%) 이하인 분</p>																																																																																			
당첨자 선정방법	<p>■ 당첨자 선정 순서 : 우선공급(70%) / 일반공급(20%) - ①지역 → ②아래 배점항목 다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배점이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 추첨공급(10%) - ①지역 → ②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p> <p>■ ①소득구분</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우선공급(70%)</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td> </tr> <tr> <td>2단계</td> <td>일반공급(20%)</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 및 1단계 공급 낙첨자</td> </tr> <tr> <td>3단계</td> <td>추첨공급(10%)</td> <td>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및 2단계 공급 낙첨자</td> </tr> </tbody> </table> <p>■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p> <p>■ ③신생아 특별공급 가점항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가점기준</th> <th rowspan="2">점수</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가.</th> <th>기준</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가구 소득</td> <td>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이하인 경우 (맞벌이인 경우 100%)</td> <td>1</td> <td>-</td> </tr> <tr> <td rowspan="3">나.</td> <td rowspan="3">자녀의 수</td> <td>3명 이상</td> <td>3</td> <td rowspan="3">-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td> </tr> <tr> <td>2명</td> <td>2</td> </tr> <tr> <td>1명</td> <td>1</td> </tr> <tr> <td rowspan="3">다.</td> <td rowspan="3">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td> <td>3년 이상</td> <td>3</td> <td rowspan="3">- 해당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td> </tr> <tr> <td>1년 이상 3년 미만</td> <td>2</td> </tr> <tr> <td>1년 미만</td> <td>1</td> </tr> <tr> <td rowspan="3">라.</td> <td rowspan="3">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td> <td>24회 이상</td> <td>3</td> <td rowspan="3">-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td> </tr> <tr> <td>12회 이상 24회 미만</td> <td>2</td> </tr> <tr> <td>6회 이상 12회 미만</td> <td>1</td> </tr> </tbody> </table> <p>※ '가. 가구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 (단위: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th> <th>3인 이하</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h>7인</th> <th>8인</th> </tr> </thead> <tbody> <tr> <td>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td> <td>5,764,250</td> <td>6,862,470</td> <td>7,224,838</td> <td>7,786,469</td> <td>8,348,099</td> <td>8,909,730</td> </tr> <tr> <td>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td> <td>7,205,312</td> <td>8,578,088</td> <td>9,031,048</td> <td>9,733,086</td> <td>10,435,124</td> <td>11,137,162</td> </tr> </tbody> </table> <p>-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격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p> <p>- 소득은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원수별 위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 해당 가점을 받아 당첨될 경우 해당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나. 자녀수' 산정방법</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일반</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합니다.</td> </tr> <tr> <td>재혼 또는 이혼</td> <td>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td> </tr> <tr> <td>임신</td> <td>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td> </tr> <tr> <td>입양</td> <td>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7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2단계	일반공급(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 및 1단계 공급 낙첨자	3단계	추첨공급(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및 2단계 공급 낙첨자	가점기준			점수	비고	가.	기준	점수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이하인 경우 (맞벌이인 경우 100%)	1	-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3	-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 해당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5,764,250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구분	내용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합니다.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7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2단계	일반공급(2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인 분(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 및 1단계 공급 낙첨자																																																																																		
3단계	추첨공급(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신청자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200% 이하인 분 및 2단계 공급 낙첨자																																																																																		
가점기준			점수	비고																																																																																
가.	기준	점수																																																																																		
가.	가구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80%이하인 경우 (맞벌이인 경우 100%)	1	-																																																																																
나.	자녀의 수	3명 이상	3	- 미성년자인 자녀를 말하며, 태아를 포함																																																																																
		2명	2																																																																																	
		1명	1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 이상	3	- 해당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기간을 말하며,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0점																																																																																
		1년 이상 3년 미만	2																																																																																	
		1년 미만	1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 횟수를 말함																																																																																
		12회 이상 24회 미만	2																																																																																	
		6회 이상 12회 미만	1																																																																																	
신생아 특별공급 소득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8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5,764,250	6,862,470	7,224,838	7,786,469	8,348,099	8,909,7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구분	내용																																																																																			
일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임신/출산/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이하 '자녀'라고 함)를 말합니다.																																																																																			
재혼 또는 이혼	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자녀를 입력하되,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배우자의 직계비속)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를 입력합니다.																																																																																			
임신	당첨자 서류제출 시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주 시까지 출산 또는 유산 관련 증명을 해야 하며, 서류미제출·허위임신·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입양	입주 시까지 입양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고,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됩니다.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원)								
소득기준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70%)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8,646,374	10,293,706	10,837,258	11,679,703	12,522,149	13,364,594
		일반공급 (20%)	부부 중 한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이하	10,087,437	12,009,323	12,643,467	13,626,320	14,609,174	15,592,027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50% 이하	10,807,968	12,867,132	13,546,572	14,599,629	15,652,686	16,705,743
	추첨공급 (1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200% 이하	14,410,624	17,156,176	18,062,096	19,466,172	20,870,248	22,274,324	
※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2023.03.28.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분의 경우 월평균소득 기준을 10~20%p 가산하여 소득 적용이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추첨제 청약 시 부부 중 1인만 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소득기준(140%)을 초과할 경우 부적격 처리 됩니다.)										
■ 자녀기준										
유의사항	구분	내용								
	출산	당첨서류 제출 시 출산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임신인 경우 임신진단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류 제출 불가 시 부적격 처리되어 계약체결 불가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입양	당첨서류 제출 시 입양 및 양육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내역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시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시간이 시작한 이후 발급받은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또는 입주 전 파악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신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 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임신 및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관련 증빙을 미제출시 부적격 처리 됩니다.								
※ 당첨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분은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 수령 내역 등 자녀 양육사실 증명서류는 공적 서류에 한하여 인정하며, 그 외 신청결과 문자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부터 제47조까지의 특별공급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0.2.23)이전에 「3자녀 우선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을 받은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단, 제55조 단서 및 제55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전에 당첨자로 관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7. 일반공급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 전용 59㎡형 : 아래 조건(①~④)을 모두 갖춘 분 - 전용 84㎡형 : 아래 조건(①~②)을 모두 갖춘 분 ①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합니다. [부부간 중복신청하여 모두 당첨 시 선신청분 유효, 후신청분 무효 처리(단, 예비선혼부부 제외)] ②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③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표4>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기준(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 이하인 분 ④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표2>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만 있는 경우 10%p, 2명 이상('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1명이고, '23.03.27. 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되며, 완화된 기준은 <표3> 출산가구 자산보유기준 완화" 및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 출산가구 완화된 소득·자산기준을 인정받으려는 분은 출생, 입양, 임신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해당 내용을 증명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자칫 미달일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순위 → ②지역 → ③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 → ④추첨 ■ ①순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우선공급(8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1순위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80%를 <표1>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역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표7>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며, 동일 순차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단계	일반공급(20%)	2순위(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에 해당되는 분 및 1단계 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잔여물량에 대해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고 지역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③<표7>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 순차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25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이 많은 분			
※ 일반공급 순위별 입주자저축 요건			
순위	순위별 자격요건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분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분		
※ 무주택기간 인정기준			
해당 사항			

	<p>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3.21.(금))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산 하되, 만30세 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계산)으로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이 된 날부터 기간을 산정 (주택소유여부는 「II. 신청기준(무주택, 소득·자산)」의 「2. 무주택 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참조)</p> <p>예시 1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4년. 예시 2 : 미혼인 신청자가 현재 만 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지 1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1년. 예시 3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 예시 4 : 기혼(만 26세 혼인)인 신청자가 현재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처분한 지 2년이 되었다면, 무주택기간은 2년. 예시 5 : 현재 만 32세 미혼(만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임. 예시 6 : 현재 만 28세 미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0년. ※ 참고 :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다라도, 혼인 전 해당 주택을 처분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는 영향을 없습니다.</p>																
<p>소득기준 (전용 59㎡형에 한함)</p>	<p>-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원)</p> <table border="1" data-bbox="231 548 1492 616"> <thead> <tr> <th>공급유형</th> <th>기준</th> <th>3인 이하</th> <th>4인</th> <th>5인</th> <th>6인</th> <th>7인</th> <th>8인</th> </tr> </thead> <tbody> <tr> <td>일반공급 전용 59㎡형 신청자</td> <td>100% 이하</td> <td>7,205,312</td> <td>8,578,088</td> <td>9,031,048</td> <td>9,733,086</td> <td>10,435,124</td> <td>11,137,162</td> </tr> </tbody> </table> <p>※ 「<표5> 출산가구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2023.03.28. 이후 자녀를 출산한 분의 경우 월평균소득 기준을 10~20%p 가산하여 소득 적용이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 전용 59㎡형 신청자	100% 이하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일반공급 전용 59㎡형 신청자	100% 이하	7,205,312	8,578,088	9,031,048	9,733,086	10,435,124	11,137,162										
<p>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내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 구성원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그 중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부부간 중복신청하여 모두 당첨 시 선신청분 유효, 후신청분 무효 처리(단, 예비신혼부부 제외)] ■ 동일단지 내 주택공급신청자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 가능(특별공급 간 중복신청은 불가)하나,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 세대 구분 없이 한국부동산원의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합니다. (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 불가)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인정된 분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해당지역 거주자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V 신청 시 확인사항

1. 청약 신청 전 청약 제한사항 확인방법

청약 신청 전 확인 가능한 청약 제한사항	청약 제한사항 확인방법
1. 세대구성원 청약자격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 확인 → 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2. 신청자 청약제한사항(제당첨제한, 특별공급 제한, 과거당첨사실확인, 부적격 당첨제한)	
3. 주택소유확인	
4. 청약통장순위확인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제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제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따른 **부적격 당첨 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은** 금회 공급하는 주택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4.03.25.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처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비신혼부부 제외)**

■ 신청자, (예비)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2. 전매 금지 및 제당첨제한, 주택 우선 매입 안내

■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산광역시 강서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따라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제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 1년이 적용됩니다.

구분	적용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관련 법령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4호)	제당첨제한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전매제한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거주 의무	「주택법」 제57조의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

※ 전매 금지, 거주 의무, 제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전매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에 따라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분양대금과 그 분양대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합니다.
 - 「주택법」 제64조 및 제101조에 따라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재당첨 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당첨자 본인 및 당첨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10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재당첨 제한 사례 참고]**

- ※ 2020.04.17.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여 당첨된 자부터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의 당첨자는 **10년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간 재당첨 제한됩니다.
- ※ 아래 예시는 재당첨제한 기간 강화 이전에 당첨된 사례로서 중전의 재당첨 제한규정을 적용합니다.
 - 2021년 1월 부산광역시(청약과열지역에 한함)에서 공급한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7년간(2028년 1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21년 3월 부산광역시(청약과열지역에 한함)에서 공급한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0년간(2031년 3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22년 6월 서울특별시(당시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한 민영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0년간(2031년 3월)까지 재당첨 제한
 - 2022년 7월 부산광역시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85㎡ 이하인 민영주택(분양가상한제)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 10년간(2031년 7월)까지 재당첨 제한
- ※ **재당첨 제한의 "세대" 기준은 "무주택 세대구성원"과 동일하므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재당첨 제한 여부 등은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청약 제한사항 확인]에서 세대원 각각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당첨자 본인 및 당첨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 안내 (노인, 장애인, 다자녀가구에 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및 다자녀가구를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하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최하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공급대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신청자가 각 주택형별 최하층 주택 수를 초과할 경우 최하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분	청약 제한사항 확인방법
신청자격	청약신청자 및 그 세대에 속한자 중 아래 ① ~ ③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최하층 주택 희망자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인정하지 아니함)를 둔 자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근거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신청방법	① 희망자는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특별공급, 일반공급 등) 신청 일자에 인터넷 청약 시 '최하층 주택 우선 배정'에 체크를 하고, 향후 당첨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아래의 자격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자격입증서류 : '신청자격 ①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격 ②번' 해당자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등 '신청자격 ③번' 해당자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중복청약 및 당첨 시 처리기준

- **공통 적용사항**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공공주택) 또는 특별공급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세대원 2인 이상이 각각 신청·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등)
 ※ 단, 2024.0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의거 부부의 경우 중복청약이 허용되며 부부 모두 당첨 시 선신청분을 유효한 당첨으로 인정합니다.(단, 예비신혼부부 제외)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에코델타시티 아테라'에 특별공급 신청자 본인 외 다른 세대구성원(부부 제외)이 일반공급에 청약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내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중 2개 이상의 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특별공급만 신청 가능하고 중복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입주자선정 제한 및 입주자저축 사용 제한 등))
 - 단, 2024.0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의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공공주택) 또는 특별공급 등 부부에 한하여 중복신청 가능하며, 부부 모두 당첨될 경우 신청 접수일이 앞선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으로 인정)만을 유효한 당첨으로 합니다. 단, 예비신혼부부 제외
- **기관추천 특별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예정자는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당첨예정자 또는 그 세대원이 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중복청약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만, 기관추천 예비대상자의 경우 예비대상자 본인이 일반공급에도 중복신청 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 당첨 시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5.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공통 적용사항**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동호 추천 및 계약체결 일정은 당사 홈페이지(<https://arteraedc.co.kr>)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금회 공급하는 주택의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이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사업주체가 보유한 예비입주자 관련 정보는 모두 폐기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의 미계약, 부적격당첨 및 계약해지 등으로 특별공급에서 남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추천으로 결정된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모두 공급하고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및 추천·계약 기간 등 해당 기간 내 서류접수 및 추천 미참여 시 예비입주자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및 여건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의 추천 및 계약까지의 대기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미계약 물량 모두를 공개한 후 동·호수 배정의 추천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천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분도 당첨자로 관리여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금회 예비입주자로서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금회 예비입주자 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예비입주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 또는 주소를 기준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 또는 주소가 변경되거나 잘못 기재하신 분은 사업주체에 유선, 서면으로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기타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준용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천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전체 공급량의 500%까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추천으로 선정합니다.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전체 공급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형별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한 물량의 600%에 미달할 경우 낙첨자 전원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청약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한국부동산원에서 당첨자 선정 후 주택형별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1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시에는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지역 내 경쟁 시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합니다. 2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표1>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하며, 동일지역 내 경쟁 시 추천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V 신청 일정 및 방법, 유의 사항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2025.03.31.(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청약Home) • 사업주체 견본주택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31(래법동 532-7)
일반공급	1순위	2025.04.01.(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청약Home)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09:00~16:00)
	2순위	2025.04.02.(수) 09:00~17:30		

-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인터넷 신청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3.21.(금)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한 경우 "해당주택",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청약통장 가입은행, 신청순위, 해당 지역 여부, 세대 구성원,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는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를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 방법

구분	조회방법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순위확인서발급 → 기타 정보 입력 후 조회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인터넷 사용 불가 시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가입은행 창구 방문)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 <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증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란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4.08(화) ~ 2025.04.17(목)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4.08(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VI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안내 등

1. 일정 및 장소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합니다.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계약체결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	• 일시: 2025.04.08.(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2025.04.10.(목) ~ 2025.04.27.(일) (10:00~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31 (래브동 532-7)	• 일시 2025.05.20.(화)~2025.05.23.(금) (10:00~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31 (래브동 532-7)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및 공급계약 체결 예약 방면에 관한 내용은 추후 당첨자 별도 안내 혹은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표의 일정이 변동될 시에는 당사 홈페이지(https://arteraedc.co.kr)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니 홈페이지를 통해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의 추첨 및 계약체결 일정은 당첨자 계약 기간 완료 후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순번에 따라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특별공급(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입주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 시 함께 안내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 여부, 과거 당첨 사실 여부 및 소득·자산보유 등 전산검색 결과 적격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적격당첨임을 소명하는 서류제출 후 적격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위 계약체결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배정 발표 후 서류제출에 관한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 포기로 간주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

■ 공통 안내사항

- ※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2025.04.10.(목)~2025.04.27.(일))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당첨자로 관리, 입주자저축 재사용 불가)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3.21.(금))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제출자로 간주하며(직계존·비속 포함), 대리 제출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 거소 사실 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 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 구비사항 이외에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자격확인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공급유형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제출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서약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 접수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차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자산 조회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장소에 비치(서류접수 장소에 비치된 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 불가(기관추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전용84㎡형 당첨자 제외) •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전원(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예비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 만14세 이상의 세대 구성원은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반드시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 전·후 기록 모두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예비) 배우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 예비 신혼부부로서 청약한 경우 예비 배우자 및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공급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예비) 배우자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등본이 분리된 세대원은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세대 구성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제출 (상기 초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산정 시 가구원수에서 태아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현재 임신중으로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 완화 적용받고자 하나, 아직 출생신고 전인 경우 출생증명서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확약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23.03.28. 이후 출생 자녀를 입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이상 장기 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본 주택의 해당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에 충족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
		○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세대원 나이 증명서류	대상자	• 청약 시 최하층 우선 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 또는 만65세 이상 고령자(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또는 미성년 자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예비) 배우자 및 세대원	•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이 외국인인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모집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 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등재 여부 확인) (3년 이상 주소변동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2세 미만 자녀를 증빙하고자 하나, 출생 신고 전인 경우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받아야 함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담당의사명·면허번호·의료기관등록번호·출산예정일·의료기관 연락처·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이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관련] 태어나 입양자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당첨자가 해당 사실을 입증 시 재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에게 관련 서류 제출을 약속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의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	• 접수장소에 비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사실 추가 확인 위한 필수 제출 (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및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위한 필수 제출 -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	예비신혼부부 서약서	본인 및 예비배우자	• 접수장소에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예비배우자	• 예비신혼부부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현재 혼인중이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비배우자	• 재혼가정에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에 한함) • 배우자의 세대원이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예비신혼부부로서 예비배우자의 등본 상 세대원이 등재된 경우 관계 확인을 위한 필수 제출(등본 상 관계 인정 불가)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 임신중인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의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	소득증빙서류 (아래 <표8> 참고)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행으로 신청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표8>의 서류 일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제출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견본주택에 비치 / 임신중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신생아 특별공급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양육사실 증빙) 자녀가 피부양자 또는 지역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 (양육사실 증빙) 아동수당 또는 부모급여 지급대상자 여부 확인
	○	통장사본		• (양육사실 증빙) 해당 급여를 사회보장급여 결정통지서 상 급여개시일부터 수령하고 있는지 확인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과정에서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에 한함) • 배우자의 세대원이 청약신청자 또는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반드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세대원 전원)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신의 경우 임신 증명 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O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의 경우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본인만)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① 파견 및 출장명령서 ②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①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불인정
	O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와 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 공급신청자 가족관계증명서 상 미성년 자녀 모두 제출 - 주민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로 설정
부적격 통보 받은 해당자	O	무주택 소명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에 따른 해당 필요서류 제출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O	인감증명서	본인 (주택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발급용 필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 불가
	O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O	위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비치 / 주택공급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O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재외동포 : 국내거소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3.21.(금))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 상기 서류 이외의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서류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확인 할 수 있게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 ※ 주민등록표등본·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기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 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표8>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불인정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공고일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 해당 직장 서류는 직인날인 필수이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팩스로 제출된 서류는 소득증빙서류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체결 시 일정 및 구비서류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3.21.(금))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계약금 입금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불가,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	부동산 실거래 신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장소에 비치
	○	수입인지(인지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발급 후 사본 제출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시 35만원 ※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하여 균등(각각 50%씩) 납부하여야 함 • 수입인지 구입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프라인 : 우체국·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장소에 비치(대상자에 한해 작성)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류제출기간에 제출 완료 시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비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 불가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위임용(본인 발급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 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재외동포 : 국내거소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인정 ※ 전자신분증의 경우 사본발급이 불가하여,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재외동포 : 국내거소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지재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함.
- ※ 본 공급계약 및 발코니 확장 계약 등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제세공과금(인지세 제외)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함.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전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여 신청인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 접수 불가)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다목의 상이등급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계약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 및 신청자에 한하여 장애 유형에 따라 편의시설의 일부를 무료로 설치해 드리며, 대상자별 제공될 수 있는 편의증진시설 내역과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희망자 필요 서류

장애인 편의증진 시설 설치 희망자	○	신청자격 증명서류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지원대상자확인원 등
	○	부양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4.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등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종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분양대금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 또는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①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이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는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약부활요청서(시공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이 제한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시공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를 준용합니다.
- 위약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 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 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지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제58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 외의 지역은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촉지역은 3개(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로 해당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분양대금 납부 및 중도금 대출 유의사항**

- 분양대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해야 합니다.(은행 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자는 지정납부일 이전에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2.52%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며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월 최초입금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음.)
 - ※ 선납할인율은 부산도시공사 내규 변경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납부 전 부산도시공사 수납부(051-810-1284)에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단,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정부정책, 금융기관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내용은 중도금 대출기관 알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중도금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출금융기관 등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대출금융기관의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계약자의 개인사정(신용불량, 대출한도 초과, 각종 보증서발급 제한 등) 등으로 대출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자는 공급대금(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중도금 용자알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조건(중도금이자 후불제)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하며, 중도금 대출 미신청, 대출비율 축소, 대출 불가 시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공급대금을 정해진 납부일정에 맞춰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및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중도금 대출협약이 미체결되거나, 대출협약 체결의 지연,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공급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중도금 대출금리를 사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지정하지 않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대납이 불가하므로, 계약자가 대출이자를 해당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관련 용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로, 대출수수료, 인지지세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공급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자는 소유권 이전시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 및 등기절차에 협조하여야 하고, 해당 분양주택의 담보평가결과 담보부족분이 발생할 때에는 담보부족분에 대한 중도금 대출금액을 계약자가 책임지고 대출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에서 중도금 금융대출을 실시하여, 중도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 중도금대출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되고, 대출 미신청자 또는 대출 불가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중도금 이자후불제** 용자 등 판촉조건에 상응되는 조건을 요구할 수 없으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별도로 공급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및 시공자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공급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납부하는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최초일 전일까지**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사업주체 등이 대납**하기로 하며(단, 사업주체 등이 지정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이자만 해당하며, 관련 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되지 않음) 계약자는 **입주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사업주체가 대납한 중도금 대출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 최초일 이후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중도금 대출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공자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연 7.05%, 부산도시공사 내규 변경에 따라 변동 가능)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 연체이율은 부산도시공사 내규 변경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연체료 납부 시 부산도시공사 수납부(051-810-1284)에 확인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예정일 : 2028년 03월 예정**(항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일은 공정 및 (가칭)에코4초등학교 개교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장마, 폭우, 폭설 등), 전염병 발생, 전쟁, 내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주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 기간(추후 별도 안내) 종료일 또는 실입주일(열쇠 수령일) 중 빠른 날로부터 잔금원납이나 입주 및 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 주택법 제48조의2항(사전방문 등)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Ⅶ 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일정 및 장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홈페이지, 모집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 법령을 통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사업 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자격(1·2순위)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 관리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모든 책임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저축을 사용한 당첨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자저축 효력이 상실되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급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사업주체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 명단관리 및 입주자저축 재사용이 불가하며, 예비입주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다만,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동·호수 배정의 추첨참가 의사를 표시한 후 동·호수를 배정받게 되면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도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 공부정리가 입주예정 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입주예정 월 약 1개월 전에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 내용을 사업 주체로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의 책임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21 시행)에 따라 주택의 공급(분양)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 주체 및 분양 주체 단독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실거래 내역을 신고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벌칙 등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공급질서 교란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 및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3. 부대복리시설

부대·복리시설	
경로당, 주민편의시설(피트니스, 골프연습장, 청소년 문화공간, 키즈룸 등), 작은도서관, 독서실, 다함께 돌봄센터,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MDF실, 경비실(2개소), 공동육아시설, 용역원휴게실, 스카이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다목적실내체육관, 키즈스테이션 등	

4. 지하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유효높이

구분	지하 주차장 차로의 유효높이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유효높이
지하1층	2.7m	2.7m
지하2층	2.3m	2.3m

5. 유의사항

공통	일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명칭은 '에코델타시티 아테라'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아파트 명칭 및 팻네임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실물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홈페이지,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은 별도의 동의없이 추진 가능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기간 시작일로부터 일정 기간동안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자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자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이후 입주자에 의한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해당 입주자에게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 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대지면적 및 지분 감소에 따른 비용 정산을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인허가 상의 사유로 인해 단지 내 시설물의 형태 및 위치, 마감,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 및 시공자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황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및 측사-공장 등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사업주체에게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단지 주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 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배정 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 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모형도의 단지 출입구 및 차량게이트 설치 위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실제 설치 위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 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등에 따라 적용됩니다. •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을 요하는 사항(동급 또는 동급 이상의 자체 선정 및 시공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계약자의 동의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대한 동의 및 승인에 대한 의무가 발생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및 카탈로그, 공급계약서,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변경 또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주택법, 건축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사업주체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아파트 및 단지 공사현장 내에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입주개시일 이전 이사나 인테리어 공사는 불가합니다. • 본 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2항 및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민간참여 공공주택을 시행하는 사업(사업주체 : 부산도시공사(민간참여 공공주택건설사업 민간사업자 : 금호건설(주), ㈜대성원, 수근종합건설(주), ㈜가화건설, ㈜다원엔컴퍼니) / 사업업체 : 금호건설(주), ㈜대성원, 수근종합건설(주), ㈜가화건설, ㈜다원엔컴퍼니) / 분양주체 : 금호건설(주)입니다.
<p>도로 및 기반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속,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보다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형도 및 CG에 표현된 단지 외부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이며,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보행자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 경사도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야간조명 및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외곽 일부 부위에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난간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건립될 예정이며, 추후 이로 인해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후 교육청의 학교 건립계획에 따라 단지 남측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단지 내 보행진입 동선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활 소음 및 외부인 이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도로변 가감속차로 일부구간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사항으로 해당부지 및 시설물은 해당관청에 기부채납 예정입니다. 단, 사용검사 전 해당관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때 가감속차로 일부구간 내 설치된 도로 및 도로 시설물 등 해당시설은 공공시설물로서 부지 및 시설물에 대한 소유, 유지보수 및 관리주체는 해당관청일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p>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추진계획의 변동 및 정책변화 등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 단지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 기관의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 될 수 있으며, 학생 배치 계획 등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초등학교: 초등학교의 예정 통학구 (가칭)에코4초 / 중학교는 에코델타시티 18학교군 내 중학교 배치할 예정 고등학교 : 북부학교군 고등학교 분산배치 예정 ※ 학교 내 학교설립 추진 상황, 학생수 증감, 교육정책 및 환경 변화 등으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학생배정학교 등이 변경 될 수 있음.</p> </div>
<p>분양홍보물 (카탈로그, 각종광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현황은 2025년 02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변경)도면을 기준으로 표현되었으며, 최종 준공도면에 의하여 시공됩니다. • 현장여건과 향후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변경)도면과 준공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조감도 등에 표현된 아파트 외벽의 줄눈 형태 및 칼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에 사용된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현장여건, 측량결과 및 각종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분양홍보물 및 단지모형 등에 표현된 옥상온탕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벽색채, 외벽모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각종 시설물, 쓰레기분리수 거장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체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경우로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온도조절기, 한기디퓨저, 스프링클러 헤드, 시스템에어컨 등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동일한 타입도 옵션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감재 및 VR 영상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청약 및 계약전에 반드시 실물 견본 주택을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와 실물 견본주택이 상이할 경우 실물 견본주택을 우선 적용합니다.) • 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시설물의 기준은 소방 인허가에 따라 사업계획승인(변경) 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형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타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주민공동시설 모형 및 단위세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 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 가구(커튼, 침대, 소파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들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분양가 미포함).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공사 시 제조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p>상이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내 설치되는 CCTV는 보안용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일부 평면의 경우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 대비 평면이 좌우 대칭되어 시공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 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와 우물천장, 주방가구, 침실 불박이장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 시공 시 대기면적, 연면적, 조정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운영 방침에 따라 일부 세대는 시공 개선 및 품질 관리를 위한 현장 내 견본 세대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용개선/특화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분양계약체결 시 변경 수락 동의를 요청할 경우 수락해야 합니다. •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발코니 날개벽의 폭, 길이, 높이 등), 각종 출입구 등의 디자인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아파트 외벽의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경비실)의 기초구조형식은 추가 지반조사 또는 굴토 후 지내력 시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시공사는 금호건설(주) (주)대성문, 수근종합건설(주), (주)화건건설, (주)원앤컴퍼니이며, 대표사인 금호건설(주)이 본 사업의 설계, 시공, 준공, 분양, 입주, 하자, 민원처리를 종합 관리합니다.
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등으로 인해 주변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주변 건물의 신축 및 증,개축 등으로 조망권 및 일조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배치계획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 위치에 따라 분양 받을 주택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피해,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각종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종별 필로티의 유무, 사이즈 및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층 및 상부 층 세대는 자전거보관대 등의 시설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낙하물 방지를 위한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고 캐노피의 형태, 재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와 외부도로 사이의 경계 헬스는 행정관서의 지침등에 따라 재질이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전기실 인접동의 경우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시험가동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남측에는 28m 도로, 북측에는 25m 도로, 동측에는 25m 도로, 서측에는 22m 도로가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일부동(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7동, 108동, 109동, 110동, 112동, 113동)의 옥상 및 옥탑에는 태양광설비의 모듈 및 구조물이 설치됩니다. 이는 단지내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설치되는 구조물로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태양광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3동 3,4호라인과 5,6호라인과 104동 1,2호라인의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 창은 0.5㎡ 미만으로 설치되며, 이로 인해 조망 및 환기가 다른 주동에 비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에코델타시티 조성공사 등으로 인해 입주 후 공사 및 도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김해공항 인근에 위치하여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임으로 청약 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차로 및 비상차로, 주차장 출입구, 단지 출입구에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문주, 주차출입구, 부대시설, 가로등,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 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경관에 해당하는 조명, 경관계획은 관할청의 규제사항에 저촉 또는 권고일 경우 계획이 변경 및 삭제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저층세대의 경우 단지 내외 통로와 도로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정식재, 각종 외부조명 및 홈네트워킹 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안테나, 피뢰침,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벽에(동별 위치 상이) 벽부형 사인물, 동표시 사인물 및 피뢰침이 설치되며 개수,위치,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미관저하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옥상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전파상태에 따라 위치가 결정됩니다. •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단지 내 설치되는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제1편 총론 제1장 총칙 제13조에 따라 24시간 일반인이 보행통로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되는 공간입니다. • 지구단위 계획시행지침에 따라 원칙적으로 단지 내외부에 담장 및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0.8m 이하의 생울타리가 설치되거나, 인접대지 또는 도로 등과 0.5m 이상 고저차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위해 투시형 담장 등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설치되는 놀이시설, 운동시설, 휴게시설, 부대복리시설, 단지내 공지, 소방도로, 재활용분리수거장, 보행가로변 등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침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로 및 패턴 디자인, 파라펫 높이, 몰딩, 창틀 모양, 줄눈 등), 지하 출입구, 외부시설물(난간, 문주, 천장, 드라이에어리어(DA), 조정식재, 시설물, 재료 및 패턴의 포장계획 등)은 구조 및 심의, 디자인 의도에 의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에 의해 변경 될 수 없습니다. • 건물요철, 외벽몰딩, 장식물, 시설물, 조명 등에 의해 일부세대의 소음, 조망 및 일조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입주시단지내도로 바닥마감, 조정, 창호형태, 입면장식물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시 제한이 있으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내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 시공됩니다. • 단지 내 CCTV 등의 카메라의 설치 및 촬영은 입주자의 방범과 편의성을 위한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습니다. • 공용부 동파가 우려되는 구역에 배관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되며, 사용에 따른 전기료가 발생합니다. • 설비 배관과 관련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장비(안테나, 중계기 등)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양호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방송 일부 채널 수신에 불량 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는 동, 라인에 따라 속도, 인원, 운행층수, 대수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단지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시설물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KT 등)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외부의 레벨차 및 원활한 통행 등을 고려하여 단지 내로 진입하는 비상차량 동선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에 램프가 계획되어 있으며, 경사지로 인해 차량 출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와 인접한 세대는 빗공해 및 소음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세대는 빗공해 및 소음공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저층의 경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2023년(7월경) 부산 에코델타시티 24블럭 금호건설 수주와 관련된 보도자료 중 단지 내 미술관 관련 자료는 오보이며, 단지 내 별도의 미술관 혹은 그와 관련된 시설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씬콘마당과 인접한 세대는 설치된 미디어 파사드에 의해 빗공해 및 소음공해, 열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 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동간 거리에 있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각 동 인접 동과의 시각적 간섭 발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세대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등의 이미지 및 모형에 표시된 단지 내·외부 디자인(색채, 입면, 마감재, 조정, 측벽 그래픽, 사인, 기단부, 기타 외부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공사 시 금호건설(주)의 현장별 디자인 기준에 따라서 변경되어 시공될 예정입니다. • 공사 중 외관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필로티, 발코니, 창틀, 색채디자인) 디자인을 포함한 단지 내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건축계획 또는 조경계획의 변경(분양 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 등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통신, 토목, 조정,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단지 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 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정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조정 시설, 포장, 기부채납 구간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시설(원충녹지 등)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설치될 예정이며,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보행자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로 경사도 및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강친환경 주택 인허가 지침사항에 따라 단지 중등 옥상에 태양광 패널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크기,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형 등 단지에 포함될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공부 조정,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사업부지 면적, 대지비면 등은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도로, 주차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단지 내 야간조명 및 차량 전조등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의 대지비면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나,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 대지비면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 지상 부위의 차로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일체의 점유권 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일부 1층 세대의 경우 하층부(지하주차장)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실 및 헬룸, DA 등 부대복리시설로 인하여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주차장 출입구의 지붕 및 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Top light, 자연환풍,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14동, 115동, 116동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1층에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상부 공간의 유지관리 상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등에 의한 환경권 및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통행로의 경우 비상차량 및 이사차량, 입주자 차량 등의 운행에 따라 단지 내 도로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배치 계획을 철저히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우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 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은 향후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 및 재활용품 보관창고 인접 세대에는 시선 간섭,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인허가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위치 및 개소는 보행 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실 시공 시 각 동별로 위치가 변경 또는 추가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거나 단지 배치 특성 및 건물 높이에 따른 문제 등으로 사다리차(크레인) 사용이 불가한 세대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합니다.
- 단지 내 조정, 동 현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에코델타시티 택지지구는 낙동강 하구의 퇴적층 지역으로, 택지 지구 특성상 도로 및 지반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하층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기계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으로 인하여 인접세대(인접상가)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중등 주차입구 홀, 커뮤니티, 상가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접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중등 및 부대시설의 장애자택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및 난간의 형태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재료, 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차호계획 및 공용부 차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 차별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입면, 아파트 외벽 문양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고, 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미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설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은 천장배관에 의해 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 후 계약 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보육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 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 엘리베이터 등)으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는 통기 배관 및 연도가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조망권·소음진동,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 수전 및 배수가 설치된 경우에는 겨울철 동파와 배수 물막힘 현상 등의 방지를 위해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일부 하부세대의 실내공간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 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 및 중간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물, 워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커버 등 설치물의 디자인 및 사양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 및 비용에 대한 책임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인허가 관청의 인허가 조건(심의 및 인허가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 도로 및 비상차량 동선 등), 조정수와 조정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색채, 크기, 모양, 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구조물(설비 환기용 급배기구, 천창, 주차장 환기구),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및 아파트 PIT와 지하층 계단실, E/V HALL 통행로에는 단열설계가 없으므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지하PIT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바닥에 층간소음 완충재가 시공될 예정이나,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여건에 따라 일부 세대는 서양으로 설계되며, 일조가 불리할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여건에 따라 저층 세대는 일조가 불리할 수 있으니 이 점 반드시 확인 후 계약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도로의 폭, 선형 및 포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 출토 시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지연 발생 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주지연 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추후 소방서 점검 시 사다리차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수목에 대해 상부 가지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공사 중 샘플 세대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는 공사상 수반되는 품질 향상을 위한 사유이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접 도로 개통 전, 단지와의 레벨 차이에 의해 옹벽이나 별도 구조물이 노출되어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입주 후 개통 시 공사에 의한 소음, 먼지 등으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정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관련 법규의 변경, 공사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조정면적 및 자연지반면적, 인공지반 녹지면적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내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각종 인입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 주변건물 신축 등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턱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 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아파트 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되거나 옥벽 또는 조정석이 추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공공보행도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인이 보행도로로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됨에 따라, 단지 내 외부인의 이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공개공지(114동 인근) 및 전면공지(114동 및 115동 인근)는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되는 공간으로 조성됨에 따라, 외부인의 이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입주인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관리비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지상 출입구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됩니다. • 우리 단지는 김해공항 인근에 계획되며, 항공기 등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건설사브랜드 B는 설치되지 않으며, 건물측벽에 마을이름 및 주동번호만 표기될 예정입니다. 단,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p>조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포장 등 포함), 바닥포장, 저층부 외벽마감, 동 환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면적, 위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수량 등이 현장 시공 시 카탈로그 및 분양홍보물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고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종류, 높이 및 굵기 등은 분양홍보물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시에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 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놀이터 내 놀이시설물 및 주민운동시설의 실외운동시설 등 조경시설은 자체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 선형, 폭과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기탑 등 구조물의 크기변경에 의해 조경면적 및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은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수경 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관리 유지·보수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옥외 비상시 소방용 안전매트 사용구간 장소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외 비상시 소방용 안전매트 사용구간 장소에는 교목이 식재되지 않으며, 인허가 과정 등에 따라 식재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조경계획(시설물, 수목식재 등)으로 인한 일조량,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뒷밭 및 반려동물 시설 운영 시,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배분 및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인근 세대는 이로 인한 소음, 냄새,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조경 유지 관리 의무는 관리주체 및 입주자에게 있으며, 유지관리 소홀로 인한 조경수 고사 및 조경하자는 시공사에 책임이 없습니다. • 조경 유지 및 관리 주체는 입주자대표회 및 관리사무소이며 이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사항입니다.
<p>문주/경비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주 형태, 높이, 폭, 위치, 마감재, 컬러 등이 상세 계획 및 외관개선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문주로 인하여 인접한 저층 세대는 조망, 일조가 간섭될 수 있습니다. • 문주는 경비실과 연결되는 형태로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에 각 1개소씩 설치됩니다.
<p>시설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헬름, 배기탑 및 제연헬름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법정 수량에 맞춰 단지 내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며 저층 일부 세대는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동별로 자전거보관소의 위치나 개수는 상이하며, 디자인 및 위치,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지하층에 제연헬름이 계획되어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상층에 제연급기용 그릴이 설치 됩니다. • 주동 주변 또는 피동과 접하여 생활폐기물보관소, 드라이에어리어(DA), 천장,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 등이 설치되어 미관저해,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시, 바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반드시 계약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인택배함은 동별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세대수의 15%만 설치 됩니다. 현장 여건 상 추후 위치 및 개소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배치도 상에 표현된 지상 DA(드라이에어리어)의 크기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주차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본 공사 시 용도, 규모, 구조, 동선, 디자인,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부족 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 환기장치(유도환)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 및 벽체 일부에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구조 형식상 지하층 주차구획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 및 채광창, 채광용 폴리카보네이트 등은 본 시공 시 디자인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치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차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설계되었으므로, 향후 관련법 개정 및 개인/단체에 의한 추가요구가 불가함.) •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설치되며, 각 동으로부터의 접근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의 위치나 구조에 따라 배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차로 높이는 설비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은 천장배관에 의해 통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이 점 확인 후 계약 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및 아파트 PIT와 지하층 계단실, E/V HALL 통행로에는 단열설계가 없으므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여건에 따라 PC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피트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지하PIT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구조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 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입 램프엔 집중호우를 대비한 전동식 차수판이 계획되어 있으며, 집중호우 발생시 차수판이 작동하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주차구간에 화재에 대비한 설비 시설이 계획되며, 해당 구역에 일반 주차는 불가합니다. • 지하 주차장 지하 1층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7m로 소형 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 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 • 지하 1층 주차장은 전동에서 직접 출입 가능합니다. • 지하 2층 주차장은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109동, 110동, 111동(1,2호)에서만 직접 출입 가능하며, 111동에 설치되는 별도의 승강기 및 106동, 109동, 111동 인근에 설치되는 별도의 계단실을 활용하여 지하2층에서 지상층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2개소,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1개소입니다.
<p>부대복리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공동시설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될 예정이며 기본제공품목에 포함된 집기비품 외에는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피트니스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키즈스테이션 등)의 옥상 및 주변에는 에어컨실외기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열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주체에서 운영하게 되며, 운영 시 입주안내문과 관리주체가 고지하는 시설 운영시간과 요금표에 따라 공용 또는 개별세대 관리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에 따라 운영시간과 요금제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각종홍보물(분양카탈로그 등) 상의 단지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터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본 공사 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조정공간 등 인근 세대는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추후 상가 분양 이후 평면,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주변도로 Level에 따른 높이도 변경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및 일부 공용부(지하주차장 및 아파트 PIT 등)에는 입주지정기간을 전후하여 입주관리업무를 위한 사무실 및 창고로 운영될 수 있으며,

	<p>이에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썬큰광장 설치되는 수경시설 및 미디어파사드의 관리 주체는 입주자대표회 및 관리사무소이며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커뮤니티 운영 및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 및 관리사무소이며, 이에 따라 관리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11동 상부에 스카이라운지 및 옥상조경, 게스트하우스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하부 세대에 증간 소음 및 진동,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인근 세대는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1동에는 스카이라운지 및 옥상조경, 게스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상부, 어린이집, 경로당, 보육시설 상부는 인접 세대 내에서 출입이 불가한 공용공간으로 관리를 위해 외부 사다리 등이 설치되며, 관리자가 출입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세대 프라이버시가 간섭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상부, 어린이집, 경로당, 보육시설 상부 중 외부사다리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은 이동형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진입하여야 합니다.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저수조 및 펌프실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하여 사용하는 단지로 법정안전관리자 선임, 점검 및 유지보수에 공동 책임이 있습니다. • 세대 내부가구(주방가구, 불박이장, 수납가구 등)설치 부위의 비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홈페이지의 월패드,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코어 형태에 따라 일부 세대는 엘리베이터 작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상부장의 깊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주방상판 가스배관 타공 등)의 종류 및 설치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 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은 세대별로 상이하고 위치, 수량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거실(스텐딩)과 침실(벽걸이)에어컨 설치를 위한 냉매매립배관이 실외기상까지 설치되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설치되지 않음. 기본 시공되는 실외에 별도 실내기와의 실외기 설치 시 공간이 부족할 수 있으며, 사용상의 불편 및 실외기의 열기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현관, 발코니, 다용도실, 현관장고 등은 비난방공간입니다.(욕실은 욕조, 샤워부스, 양변기, 세면기 하부 공간은 바닥 난방 시공 제외) • 단위세대의 드레스룸, 팬트리, 욕실에 바닥 난방이 적용되며, 별도의 난방조절기는 설치되지 않고 평면에 따라 거실 및 인근 침실에서 통합 제어됩니다. •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실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 품목(콘센트, 조명기구)의 사양 및 설치위치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세대는 세탁실 발코니 배수 및 통기를 위한 입상배관이 추가로 노출 시공됩니다. • 59B, 59C타입 다용도실내 세탁 배수 및 통기를 위한 입상배관이 노출 시공됨. 저층부 세대는 입상배관이 추가로 노출 시공됩니다.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전열교환 환기방식으로 기계환기 설비가 적용되어 있으며, 실외기실 천정 혹은 발코니 천정에 전열교환기 및 덕트가 노출 설치되고,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 현장의 전열교환기는 H13급 헤파필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냉장과 설치 시(빌트인 냉장과 옵션 미선택시) 주방가구보다 냉장과 전면이 돌출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의 위치는 관련규정에 의거 침실벽 등 노출된 부위에 설치될 예정이며, 공사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우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중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 동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내 창 크기는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력벽은 비내력벽으로 또는 비내력벽은 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크기, 또는 창위치가 따라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홈네트워크 서비스는 별도의 IP사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휴대폰 제어시는 통신요금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기간통신사업자의 일반유선전화와 가입하지 않고 인터넷전화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홈네트워크기기(월패드등)의 일부기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 타입의 침실1발코니(하향식 피난구 설치)에는 물건을 적재할 수 없으며, 물건 적재 시 피난활동에 방해유발, 에어컨 효율 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 타입의 침실1 발코니에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되어 미관저해, 상하부중 소음 유입,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건을 적재할 수 없으며, 물건 적재 시 피난활동에 방해될 수 있습니다. • 침실1발코니(하향식피난구)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향후 비상상황 발생 시 장애물의 설치로 인한 계약자의 피해에 대해 시공사 및 사업주체는 책임이 없습니다. • 에어컨 냉매배관과 콘센트는 거실과 침실1, 총 2개소에 설치되며, 에어컨 옵션선택 시 해당실의 냉매매립관 및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냉매매립배관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해당 실 내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침실1 에어컨 냉매박스 내부에는 냉매배관이 설치되며, 별도의 마감카바 없이 도배로 마감됩니다. (위치 스티커 부착됨) 냉매박스 인근에 벽걸이용 콘센트(1구형)가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거실용 에어컨 냉매박스는 플라스틱 마감카바로 설치될 예정이며, 현장 여건에 따라 냉매박스 위치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및 욕실배기는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각 세대의 외벽에 배기가구 설치됩니다. • 전 세대 침실1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위 아래층 교차시공)될 계획이며,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세대 피난계획은 변경될 수 도 있습니다. (1층 및 하부층이 필로티인 2층세대는 하향식 피난구 설치되지 않음) • 소방 인허가청 요구조건에 따라 하부층이 필로티인 세대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내시경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환기디퓨저, 가스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가스배관은 설치위치에 따라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옵션에 따라 난방조절 개소 위치, 수량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욕실 천정에 설비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크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후드 상부장에는 주방자동소화장치가 가스, 전기 검용으로 설치되며, 후드 상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전기쿠팡 옵션, 주방패키지 옵션 선택 시 가스 배관은 가스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까지 제공되고 주방용 가스배관은 미설치됩니다. 이 경우 가스 쿠팡 설치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옵션 비용은 해당 금액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 옵션에 따라 주방용 가스배관이 미설치 되면, 월패드 및 생활정보기 내 가스차단 기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른 배선기구, 통합스위치, 조명기구의 디자인, 사양, 설치위치, 설치수량, 종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등에 명시한 IoT관련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시 일부 서비스의 변경 또는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택형에 따라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시공시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구현된 제품의 위치, 색, 사양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창호 색상,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풍동실험, 풍압검토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협력업체의 부도 등 계약관계로 인해 창호의 형태, 규격, 개폐방향, 손잡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 사용, 장시간 음식물 조리, 실내 빨래 건조대 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는 인터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 세대 거실창 및 침실1창에 유리난간이 설치되니, 계약전에 도면 및 분양홍보물 등 필히 확인 바랍니다. • 거실창의 가운데 창, 침실1 발코니 창의 한쪽 창은 고정되어 있으며 개폐가 불가합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5층 이상의 84타입 거실에 집광채광루버가 설치되며, 이로인해 커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해야 합니다.(집광채광루버는 개인이 소 유할 수 없고,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음.) • 5층 이상의 84타입 거실에 설치된 집광채광루버는 에코델타시티지구 신재생에너지 의무사용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입주자가 임의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 집광채광루버(슬릿, 모터, 수신기 등)는 본공사시 디자인, 형태, 재질, 마감, 개폐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작동 소음, 빛반사로 인한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자동/수동 개폐가 가능한 루버창이 설치되며, 작동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상의 단위세대와 대칭형으로 시공되는 세대가 있으니 계약전 해당 평면 및 동호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타입별 동호수 위치는 분양 카탈로그를 참고)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단위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사유와 관련하여 설치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평형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견본주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 평형별 유상옵션과 무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 차별화마감 적용시, 별도마감적용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색상이 마감을 위해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마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 페인트, 뽀침 등 기타 자재로 마감되고, 주동 형태에 따라 석재 및 페인트 등 기타자재의 적용비용을 각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은 필로티가 설치되며, 필로티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으며, 필로티 위층 및 최상층세대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티프닝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목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습니다. • 에어컨 가동 시 실외기실 루버는 반드시 열려있어야 하며, 루버 부근에 물건 적치 시 공기 순환 장애로 인한 효율 저하 및 과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대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수전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 차이는 사업주체가 임의조정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정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해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덕트/PIT 공간은 임의로 벽체를 철거하여 불법으로 확장할 수 없습니다.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에 관한 기준」 제8조제2항제4호에 의거하여 침실 및 욕실 문에는 손 끼임 방지 장치 가 시공되며, 본공사 시 장치의 디자인 및 재질 등 상세사항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시공되었으며, 층별, 세대별 실제 느끼는 소음과 진동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대형형 타입의 경우, 분양 홍보물 대비 일부 각 실의 향,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호수, 세대 배치, 코아 형태를 확인 후 계약해야 합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 실과 발코니가 만나는 면에 창호가 설치되며 발코니 외부쪽으로는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층 및 하층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로 인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보다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에서 전체 발코니가 연결되어진 경우 각 실이 아닌 거실 혹은 주방 등 특정실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하게 되어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死)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공사 시 설비배관 구성에 따라 우물천장, 커튼박스의 크기 및 형태,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11동 상부에 팬트하우스가 설치되며, 해당 타입은 바닥하부로 우, 오수 배관이 지나가므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11동 최상층에 펜트하우스, 104동과 116동 최상층에 테라스형 세대가 계획되어있으며 이로 인해 하부 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테라스 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1동 1203호(84E 타입), 116동 1102호(59A 타입)는 건축법상 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테라스를 제공하는 주택이며, 테라스는 해당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공간이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없고 단순 점유하는 공간이므로 계약 전 이에 대해 관련 도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4동 1502호(84A 타입), 116동 1102호(59A 타입)의 테라스에는 공간 구획을 위한 난간대 등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계약 전 관련 도서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입주 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11동 1203호(84E 타입), 116동 1102호(59A 타입)는 전면 테라스는 공용공간으로서 사적 소유물은 아니나 개별세대를 거쳐 진입해야 하고 해당세대의 프라이버시 및 방법의 이유로 인해 공공 관리 목적이 아닌 사적사유로 진입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인 이유로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무단주거침입이 될 수 있음에 대해 주택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공공의 관리목적으로 관리자가 출입할 수 있으니 점검 및 유지보수를 위한 진입 요구 시 반드시 개방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사적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계약자는 본 주택을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상기 내용을 매매계약서 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향후 매입한 제3자가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111동 1203호(84E 타입), 116동 1102호(59A 타입)주택의 테라스는 외부에 노출된 공간으로 인접한 세대 등에 의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재(목재 등)가 사용될 경우, 자체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체재체의 품질상 하자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미사용시 해당없음) • 무늬가 표현된 자재류(세라믹 타일, 엔지니어드 스톤, 강마루, 시트 등)는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배인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에 구현된 자재와 다소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현관디딤판, 욕실덧선반, 주방 벽/상판 등)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음. 재료의 접합연결부가 발생하며,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스톤과 세라믹타일(유상옵션 품목)은 재료의 특성상 이음매 부분이 발생하며, 이음매 나누기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체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 시기의 생산 여건에 따라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가구(불박이장류 등)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해야 합니다.(마감, 단열재의 두께 등의 차이로 홍보물에 표기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의 폭높이·전기용량 차이로 배치가 불가하거나 외부창호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현관 디딤석은 석재의 특성상 디딤 폭, 무늬, 색 등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시공 편의성을 위해 분절 시공 됩니다. • 타일 줄눈 위치 및 각 악세서리 위치는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확인 후 계약 해야 합니다. • 주방상판은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판 크기와 형태에 따라 나누어 제작/설치되는 관계로 본 시공시 연결부위가 발생(세대별로 위치가 다를 수 있음.)되며, 제품 특성상 스크래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 및 세탁실 문턱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욕실화의 높이가 상관없습니다.(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세대내부 욕실 및 발코니(실외기실 포함)의 바닥단차는 바닥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탁기 자리 및 피난사다리 구간은 구배가 없음) • 세대내 설치되는 자재 및 제품(주방 및 일반가구, 현관광화문, 제작품, 마루, 타일 등)는 본 공사시 업체선정 결과에 따라 제조사 및 시공사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재 특성상 또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 등의 차이로 실제 시공시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외벽 및 세대간벽 등 단열설치부위의 결로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아트월 부위에 벽걸이TV 고정 시 충격에 의한 마감재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며 직접 벽체에 고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거실 우물 천장 및 각실의 커튼박스의 크기는 스프링클러 및 환기 배관 등의 설치로 인해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 아트월은 오픈줄눈으로 시공 됩니다. • 우물천정과 걸레받이는 본공사시 하자발생 방지를 위해 PVC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 될 수 있습니다. • 가구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욕실거울, 현관거울 등)의 벽, 바닥, 천장등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마감내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불박이장류(신발장, 현관창고, 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는 주택형별로 상이하며, 제품생산의 시점에 따른 이색이 있을 수 있음. ex) 도배지, 시트지, 가구류, 마루 등 각종 마감 자재 • 불박이장류(신발장, 현관창고, 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힌지, 레일, 조명, 스위치 등)는 본공사 시 제품 생산의 시점에 따른 이색이 있을 수 있으며, 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ex) 도배지, 시트지, 가구류, 마루 등 각종 마감 자재 • 불박이장류(신발장, 현관창고, 팬트리, 주방가구, 각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내부에 설치되는 악세서리류 및 부자재는 본공사 시 제품 생산의 시점에 따른 이색이 있을 수 있으며, 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ex) 도배지, 시트지, 가구류, 마루 등 각종 마감 자재 • 싱크대,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돌림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 배관이 시공되지 않으며, 제품생산의 시점에 따른 이색이 있을 수 있음. ex) 도배지, 시트지, 가구류, 마루 등 각종 마감 자재 • 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 계획(디자인, 크기, 도어 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선반은 본공사 시 형태,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설치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 특성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 마감재(마루자재, 주방상판, 타일, 인조대리석, 엔지니어드스톤, 벽지 등)는 시공 방식 및 도색 과정 등에 따라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한 색상 및 무늬와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문열림 방향, 날개 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턱에 의한 신발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 분	등 급
내진 중요도 I	Ⅶ - 0.22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Ⅶ)으로 표기

9.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양가격은 상한금액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 분양가격 공시

(단위 : 천원, VAT포함)

구 분		총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115,269,398		
	기간이자	2,314,990		
공사비	필요적 경비	54,405,266		
	그 밖의 비용	2,253,517		
	계	174,243,171		
건축비	토목	토공사	13,989,305	
		흙막이공사	-	
		비탈면보호공사	-	
		옹벽공사	-	
		석축공사	-	
		우·오수공사	3,173,762	
		공동구공사	-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도로포장공사	3,173,769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	
	정화조시설공사	-		
	조경공사	16,336,284		
	부대시설공사	-		
		계	36,673,120	
	건축	공통가설공사	6,464,184	
		가시시설물공사	2,016,659	
		지정 및 기초공사	4,626,354	
		철골공사	-	
		철근콘크리트 공사	67,959,970	
		용접공사	-	
		조적공사	3,388,151	
		미장공사	3,497,551	
		단열공사	-	
		방수 방습공사	2,423,261	
		목공사	4,259,591	
		가구공사	2,103,151	
		금속공사	1,072,468	
		지붕 및 환풍공사	328,343	
		창호공사	6,254,367	
		유리공사	1,966,923	
		타일공사	3,493,093	
		돌공사	381,197	
		도장공사	2,006,751	
		도배공사	1,132,277	
		수장공사	2,012,934	
		주방용 가구공사	1,402,103	
		그 밖의 건축공사	11,001,411	
			계	127,790,739
		기계설비	급수설비공사	6,517,905
			급탕설비공사	5,703,166
			오·배수설비공사	5,871,261
			위생기구설비공사	2,817,565
			난방설비공사	1,199,938
			가스설비공사	469,136
			자동제어설비공사	78,099
			특수설비공사	-
			공조설비공사	-
				계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18,684,498
			정보통신공사	14,010,007
			소방설비공사	11,690,268
			승강기공사	1,541,889
			계	45,926,662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8,865,408
	이윤		-	
		계	8,865,408	
	간접비	설계비	5,637,500	
		감리비	7,207,098	
		일반분양시설통비	5,690,538	
		분담금 및 부담금	-	
		보상비	-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11,087,336	
		계	29,622,472	
	그 밖의 비용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25,480,758	
	합계		471,259,400	

※ 끝자리 이하 단수 반올림 인하여 천원 단위 일부 오차가 있을 수 있음.

10.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아래의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

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택지 가산비										
기간이자	제세공과금 및 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택지와 관련된 경비		말뚝박기 공사	흙막이 차수벽 공사	소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지역난방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314,990,492	1,959,579,758	97,978,987	195,957,975	1,114,424,167	541,625,000	49,825,920,906	15,296,568,795	71,347,046,080		

건축 가산비										
법정초과 복리시설	친환경 주택건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텔리전트설비				지하주차장 증고증가	사업승인조건 조경특화	법령개정 가산비 전기차 충전시설	소계
			홈네트워크	초고속특등급	에어컨냉매배관 설치	기계환기설치				
2,035,701,084	2,345,260,392	2,073,492,463	9,426,690,000	2,710,560,000	3,023,600,000	5,101,350,000	611,200,000	1,361,595,110	207,900,000	28,897,349,049

11.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 기계, 토목, 조경감리	통신감리	소방감리
상호	(주)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주)거원엔지니어링, (주)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 (주)에스아이그룹건축사사무소	이호기술단(주)	이호기술단(주)
금액	6,158,227,763원	435,968,098원	612,902,900원

12.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사업자등록번호)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부산도시공사 (605-82-05238) 금호건설 주식회사 (104-81-31309) 주식회사 대성문 (603-81-52586) 수근종합건설(주) (606-81-29196) 주식회사 가화건설 (621-81-45249) (주)다원엔컴퍼니 (220-81-22757)	금호건설 주식회사 (104-81-31309) 주식회사 대성문 (603-81-52586) 수근종합건설(주) (606-81-29196) 주식회사 가화건설 (621-81-45249) (주)다원엔컴퍼니 (220-81-22757)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주)에이치케이건축사사무소, (주)거원엔지니어링, (주)대성씨엠건축사사무소, (주)에스아이그룹건축사사무소 이호기술단(주)

13. 에코델타시티 아테라 현장접수처(서류접수/공급계약)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에코델타시티 아테라 현장접수처(서류접수/계약체결 장소)	
	<p>■ 위치안내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31 (괘법동 532-7)</p> <p>■ 운영시간 : 10:00~17:00</p>
<p>에코델타시티 아테라 홈페이지</p> <p>https://arteraedc.co.kr</p>	<p>분양문의</p> <p>051-202-1025 (10:00 ~ 17:00)</p>